

미래의 희망 로스쿨  
LawSCHOOL 차오

2016. JAN + FEB



01/02



- K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움과 민첩함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원숭이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원장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법전원협의회는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출제·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 및 해설집 발간,  
공동입학설명회·취업박람회 개최, 각종 연구과제 수행 및 공청회 개최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이 모든 것이 원장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이 힘 써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법전원에 지원될 정부 예산 확보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및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화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지역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법전원의 안착과 발전을 위해 모두 힘써야 할 시기에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사법개혁과 법전원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전원 교직원과 학생들이 한 마음이 되어  
역사의 발전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법전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되겠지만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16년에는 법전원의 발전을 위해 회원교 상호간 협력 증진과 주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법전원의 문화확대,  
입학전형의 투명성 강화, 고비용 구조 개선 등 법전원의 안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법전원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법전원 가족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오수근

#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6  
01 + 02



발행일 2016년 1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오수근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 (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2 신년사
- 04 세대공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구욱 회장
- 08 로스쿨 탐방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원장
- 12 행복 로스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승 학생
- 14 SPECIAL REPORT  
1. 사건25시  
2. 사법시험 폐지  
3.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문화확대 방안
- 26 파워인터뷰  
서청운 판사
- 28 로스쿨 오피니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형규 원장
- 30 로스쿨 특파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조명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박경선
- 36 NEWS LETTER
- 46 특별기고  
박상흠 변호사
- 50 로스쿨 핫이슈
- 52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 56 톨아보기 / 문화가 산책
- 60 협의회 소식 / LAW TOON
- 62 OUT CAMPUS / LAW 날말퀴즈

세계 대학평가 기관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대학 중 세계 대학 순위 200위권에 들어간 대학은 겨우 3개교(영국 THE TIMES 기준) 또는 6개교(영국 QS 기준)에 불과하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비가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수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구욱 회장을 만나 세계적 대학을 만들기 위한 발전 방안과 한국 고등교육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들어 봤다. editor. 박소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구욱 회장

## “로스쿨 학생들, 법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지도자 될 가능성 높아”



- 학력  
경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경력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現 영산대학교 총장  
現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1대 회장

**Q.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A. 대교협은 국내 4년제 대학의 협의체로서 1982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대학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정부 건의, 대학입학전형 총괄 지원, 대학 평가인증, 대학정보공시 자료 제공 등 대학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학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Q. 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등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것 같다.**

A. 대교협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대학 현실이 녹록치 않기에, 고등교육의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도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Q. 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무엇인가?**

A.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대학발전 비전 2025 프로젝트'이고, 두 번째는 '교육미래 2030 프로젝트'이다. 우선 '대학발전 비전 2025 프로젝트'의 핵심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대학 중 20개 정도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고, 그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해야 할뿐더러 첨단 산업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20개 대학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해야 하고, 이 대학들에 한해서는 종전의 대학들이 받던 모든 규제로부터의 예외를 인정해서, 외국의 선진 대학들이 누리고 있는 것만큼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 또한 R&D(연구·개발)투자에 이 20개 대학이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해외 연구 프로젝트 진행 시 대응투자를 정부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선두 대학들은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상위 20개 대학에 위와 같은 기본 원리를 적용한다면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세계 200대 대학에 들어가는 성과를 낼 것이다.

**Q. '교육미래 2030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해 달라.**

A.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가 모방 경제 체제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 체제에는 적합하지 않다. '교육미래 2030 프로젝트'는 창조경제 체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입시 제도를 5년 단위 프로젝트로 도출해내는 것이다. 앞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

서 어떤 교육 체제가 형성돼야 하고, 어떤 입시 제도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Q. 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청년 10명 중 7명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을 정도로 교육열이 뜨겁다. 우리나라 교육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워낙 강하다보니, '교육의 역피라미드 구조'를 보인다. 전문대가 150개 정도인 반면, 4년제 대학은 2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독특한 구조로 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교육열과 투자의 열기를 억누르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교육열이 뜨겁다는 것은 결국 그 국가와 민족의 잠재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장점으로 해석하고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투자된 교육 인력을 잘 분류하고, 50~60개 정도의 국내 대학(20개의 최우수 대학+예비후보 대학 40개)은 세계적 대학을 지향해야 한다. 고등교육 인력 중에 최첨단 학문 후속세대를 기르는 부분과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쪽이 지혜롭게 조화를 이룰 때, 이러한 교육열은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현재 대교협 회장이면서, 영산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육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어려운 질문이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직 그 상태에 오르지 않은 사람을 끌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개인은 차등이 있다. 인품과 깊이가 다르고, 전문적인 수준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보다 높이 올라간 사람이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그보다 낮은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Q.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년간 법관 생활을 했는데, 본인만의 철학과 원칙이 있는지? 또 그 원칙이 현재에도 적용되는지?**

A. 법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유념했던 것은 '법은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을 떠난 이후에는 더욱 더 절실하게 느낀다. 영미법을 'Common Law(보통법)' 라고 하는데, 그 명칭에 공감한다. 법은 본질적으로 건전한 상식에 부합해야 하고 결론 또한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법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정책 역시 건전한 상식과 분명한 이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대교협 내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에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아쉬운 점이 있다. 그동안 대교협 내 법전원 대책특위의 일관된 입장은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사시 존폐에 관해 대학 사회 내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교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

심스럽다. 법무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몇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Q. 유념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A. 첫째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메커니즘에 관련된 것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용이 된다는 생각은 대단히 구시대적이고, 현 사회 실정과 맞지 않는 발상이다. 매년 1,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한때 판·검사를 영감(令監)이라고 높여 부르던 시대가 있을 정도로 소수만 선발했지만, 과거와 달리 요즘은 많은 인원이 선발되고 있다. 둘째는 과연 사법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이 '희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전원에 입학하는 것이 희망의 사다리를 타는 것인지, 과거의 케케묵은 향수와 관념을 유지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Q. 과거의 법률시장과 현재의 법률시장은 어떻게 다른가?**

A.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법률 서비스 분야는 과거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졌고, 향후 더 달라져야 할 것이다. 과거 법률 서비스 산업은 일반 송무와 민·형사 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일 만큼 단순했다. 그러나 현재 법률 서비스 산업에서는 일반 송무가 갖는 비중이 대단히 적으며, 오히려 기업 법무 쪽이 훨씬 커졌다. 우리 사회는 법률만 공부한 사람이 적응하기에는 전문화·다변화됐다. 보통의 일반 상식을 갖고는 전문 분야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법률만 공부한 사람이 모든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상은 대단히 후진적이고,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 오히려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이 법률을 배워서 각 분야에 투입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해야 한다.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

**Q. 대학의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를 채택해 모든 선발에 면접, 서류 평가를 반영한다. 법전원 입시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서류·면접 전형이 진행되지만, 일부에서는 불투명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A.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전형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각 법전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안 한다면 법전원 제도는 근원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입학전형에 있어서는 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 공정하지 않았을 경우 대학의 관계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학 나름대로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그 교육적 가치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은 존중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Q.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A. 2014년 말, 대교협에서는 '변호사 선발제도 및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서'를 교육부와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건의서의 내용은 크게 6가지인데, 모두 법전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다. 첫째는 법전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단계까지는 사시 존치 또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 논의는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법전원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법전원 제도는 매우 잘 설계되어 있고, 무엇보다 특성화 방향을 설정한 것이 미국 로스쿨보다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는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 감독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전원별 특성화 교육과 충돌하는 선택 과목시험제를 폐지해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일률적으로 연수를 받게 하는 법률사무기관 연수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법전원 입학 총 정원을 500명 증원해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Q. 오랜 시간 법원에서 생활한 법조계 선배로서, 법조인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조언해 달라.**

A. 법조인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는 역설적이게도 '갑설을설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또는 법전원에서 법학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취지에 따르면 ~가 옳다', 즉 갑설을설이 해당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여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론이 법률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어떤 법원칙과 법리

가 정해지면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한다. 그런데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예측하면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된다. 법률·이론 원칙은 머릿속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들은 법률만 공부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현장으로 가서 밑바닥부터 올라갈 생각을 해야 한다. '현장을 누비고, 온몸으로 부딪치면서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 효용에 대해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Q. 법조인을 꿈꾸는 법전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사회는 법조인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을 때, 변호사의 정체성은 '용', '영웅'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 산업인력'이다. 그 이상의 환상을 가질 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들에 대한 착오가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오히려 법전원 학생들은 '환상'이 아닌 '꿈'을 가져야 한다. 법전원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은 법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기존의 송무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법전원생들은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해서 가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법조인으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법전원생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꿈'을 잃지 말아야 한다. **창**

개강 날이면 칠판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다”라고 따뜻하게 말하는 교수가 있다. 학생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털어놓고, 교수는 자신의 경험담에 비춰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원장의 이야기다. 서강대 법전원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 가득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 지도 모른다. editor. 박소희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원장

##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실력 있는 법조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됩니다!



**Q. ‘작지만 강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불리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교육 목표와 운영 철학은 무엇인가?**

A. 서강대학교 법전원의 교육 목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법조인’, ‘국제화 시대에 조응하는 법조인’, ‘기업법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네 가지의 교육 목표 모두 중요하지만, 원장으로서 특히 강조하는 점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서강대학교는 예수회의 교육기관으로서 지성은 기본이고, 인성과 영성에 대한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전원 학생들에게도 위와 같은 정신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도록 교육한다.

**Q. 학생들 사이에서 소통하는 원장으로 통한다던데.**

A. 학기 초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진행한다.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이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성의 중요성과 겸손함에 대해서 교

육한다. 법전원 학생들은 우수한 인재들이어서 향후 어느 분야로든 진출하겠지만, 그들이 소속된 조직과 사회를 위해서는 훌륭한 인성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지성이 양이라면 인성은 질’이라고 강조한다.

**Q. 서강대 법전원은 매년 높은 원서접수 경쟁률을 보인다. 취업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A. 수험생들 사이에서 서강대 법전원의 아웃풋이 좋다, 즉 취업의 질이 좋은 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에서 취업률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법률시장 개방 3단계만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 변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로펌(법무법인)만이 아니다. 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퍼블릭 섹터(공공부문)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하는 편이다.

프라이빗 섹터(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을 더 강조하는 것은 영미 시장에서도 이미 공감하고 있으며, 그들의 추세이기도 하다. 한 예로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법전원 출신 변호사 네 명 중 세 명이 서강대 법전원 출신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Q. 국제적 기업법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다. ‘기업법’에 초점을 맞춘 까닭이 있나?**

A. 기업법 분야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구체적으로는 ‘금융법’을 특성화로 정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특별히 금융법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과거부터 업계에서 ‘서강학파’라고 불렸을 만큼, 서강대는 경제·경영 분야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경영·경제와 법학을 융합하면, 기업과 잘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금융법을 특성화로 선정했다. 실제로 많은 졸업생들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Q. 세계적인 학술대회인 ‘금융법 국제학술대회’를 5년째 맡아서 개최하고 있다고 들었다.**

A. 5회까지 개최된 금융법 국제학술대회는 초반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3회째부터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할 만큼 큰 규모로 발돋움했다. 총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의 학계, 법조계, 업계의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해진 주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펼친다. 2015년의 경우, 영국의 글로벌 로펌인 DLA PIPER와 미국 O’MELVENY&MYERS LLP의 최고 전문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Q.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나?**

A. 물론이다. 금융법 국제학술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동시통역이 없다는 것이다. 서강대 법전원 학생들 중 영어, 일어, 중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통역과 자료 번역을 맡긴다. 학술대회 당일에는 학생들이 각국 발표자 옆에서 한국어 통역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으며, 자신감을 갖게 된다. 더불어 5개국의 취업 시장에 노출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게 된다.

**Q. 법전원의 실무교육에 대한 우려가 있다. 서강대 법전원의 실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A. 실무교육에 대한 우려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아마 모든 법전원의 공통된 고민일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서강대 법전원에서는 2014년부터 서울 서부지방법원과 MOU를 체결했다. 물론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이 학교에 와서 실무 강의를 해주시지만, 보다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다. 2015년의 경우 서부지방법원 법관들을 초청해 10회 가량의 특강도 진행했다.

하지만 실무교육에 대한 체계가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체계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실무교육에는 기업실무(사내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25개 법전원이 새로운 시스템을 공동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 법률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서강대 법전원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A. 어려운 질문이다. 영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지만, 변호사시험 준비에도 벽찬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를 하라고 지도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어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금융법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대형로펌, 외국계 등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 개방 후 학생들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몇 년째 개최하다보니 외국 로펌에서도 서강대 학생들이 외국어 실력이 우수하다는 좋은 선입견도 생겼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전원 1기 중에는 국제기구에 진출한 졸업생도 있다.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가 가능한 학생들에게는 국익과 인류발전을 위해 국제기구에 취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Q. 3단계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내의 법률 서비스 질이 향상할 것으로 보는가?**

A.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치

열해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개선될 것이고, 국내 로펌의 태도도 많이 바뀔 것이다. 영미 로펌의 변호사들은 이미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다. 그들은 한국 로펌의 변호사들이 아직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며, 갑-을 관계에서 스스로를 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한다. 국내 클라이언트들의 생각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계 로펌을 이용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보수를 깎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인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은 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Q. 원장으로서 최대의 고민은 무엇인가?**

A. 다른 원장님들과 비슷하겠지만 첫 번째 고민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다. 적어도 응시 인원의 75%까지는 합격률이 상향해야 한다고 본다.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법전원에 진학했는데,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게 된다면 '변호사시험 낭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다. 학교에서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뿐, 결국 공부의 혼자는 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더 많이 합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고민은 '취업률'이다. 개인적으로 취업률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는다. 서강대 법전원의 취업률이 높은 까닭도 있지만, 취업률 집계에는 허수가 많기 때문이다. 연수원 출신이나 법전원 출신이나 변호사가 된 이후 몇 년 사이에는 이동이 잦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본인이 원하는 좋은 직장에 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지 즉, 취업률보다 취업의 질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Q.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A. 학생들에게 '솔로몬의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솔로몬 왕이 왕자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그의 아버지인 다윗왕은 당시 전쟁을 하는 족족 승리해 자아도취에 빠졌다. 승리의 기념으로 반지를 하나 만들어, 글귀를 새겨 넣고 싶었던 다윗왕은 어떤 글귀가 좋은지 신하들에게 물어봤다. 신하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자, 그들은 똑똑한 솔로몬 왕자에게 물어보라고 권했다. 솔로몬 왕자의 답이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였다.

법조인은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러서는 안 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평상심을 유지했으면 한다. 창

66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평상심을 유지했으면 한다.  
 99



“변호사도 우리사회 시민 중 한 명이잖아요. 결코 기득권층이나 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한 직종이죠. 저는 법률전문가라는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묻자 하태승 학생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이다. editor. 박소희

## “노동전문변호사가 돼 사회구조적으로 착취당하는 이들을 돕고 싶어”

고려대학교 로스쿨 7기 하태승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행복해지는 길은 법조인이 돼 사회구조적으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나의 종교적 신념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Q.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을 선택한 까닭은?** 물론 처음에는 사법시험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2017년에 확실히 폐지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침몰하는 배’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나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진정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처음 로스쿨에 입학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반대하셨다. 법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고, 법률공부가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께 나의 신념과 내가 꿈꾸는 법조인상에 대해 말씀드리자, 그때부터는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Q. 로스쿨 합격 후 1년, 어떻게 보냈나.**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처음엔 무척 고생했고, 양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라 무조건 책상에 오래 앉아있었다. 앉아있는 시간만큼 집중하는 시간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였긴 하지만.(웃음)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공부방법일까 모색했는데, 사실 아직도 확고하지는 않다.

**Q. 그래도 지난 1년간 특덕한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면?** 법률가의 본질은 법률 분쟁에 있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법률가가 되려면 단순히 책을 외우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법을 보면 조문이 천조가 넘고, 또 그 조문에는 각 장이 있을

만큼 그 양이 방대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별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 나도 아직 그 틀을 잡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웃음)

**Q.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단순히 사법시험 존치를 막아내는 것 뿐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로스쿨 제도가 얼마나 가능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인지 보여 주려고 한다. 현재 로스쿨은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명분에 합당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등록금, 장학금 문제 등이 그러하다. 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Q.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종전에 운영되던 형태에서 두 개의 위원회를 추가했다. 하나는 ‘공익변호사 지원기금설립 준비 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로스쿨제도발전위원회’이다. 현재 서울대와 사법연수원에서 공익변호사 지원기금펀드를 형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모델로 변형할 것이다. 공익 변호사를 돕는 기부금을 굳이 로스쿨 동기, 선·후배로 한정하지 않고, 고려대학교 학우 전체가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원의 폭이 넓어진다면, 공익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Q. ‘로스쿨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는 만큼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지난 12월부터 학생회에서는 ‘로스쿨 들여다보기’(http://insidelawschool.kr/)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로스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론자의 ‘개천에서 용 난다’는 주장에는 두 가지의 오류가 있다. 첫 번째는 ‘개천’이다. 사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장기간의 소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개천에서 용은 나올 수 없다. 두 번째는 ‘용’이다. 법조인은 현대 서비스업의 한 직종이지 결코 기득권층이나 용이 아니다. 다시 말해, 법조인은 국민

들로 하여금 더 저렴하고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용으로 표상되는 거대한 지표가 되면 안 된다.

**Q. 꿈꾸는 법조인의 모습은?** 사실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부끄럽지 않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 먼 훗날의 내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멋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신념을 가슴에 품고, 학부 때부터 계속 꿈꿔왔던 일들을 하고 싶다. 대형 로펌에 입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노동 전문변호사’가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창**

### 하태승이 말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노하우

**긴장은 금물, 편안한 마음으로 리트는 약 1년 정도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면서 실전 중심으로 공부했다.** 리트 점수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본 시험장에서도 긴장을 많이 했다. 긴장하다 보니 마킹 실수도 했는데,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솔직한 자기소개서** 노동,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온건하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써내려갔다. 왜 이 문제에 관심이 있고,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변호사가 되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가감 없이 솔직하게 작성했다.

**확실한 목표** 로스쿨에 들어와서 하는 공부는 정말 힘들고, 종종 인생에 회의까지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에 왜 입학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이 필요하다. 학부 시절에는 하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고민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 현상에도 관심을 갖고, 왜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이 필요한지, 또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아마도 입시 준비를 하면서 큰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지는 법무부의 발표 이후 대한민국은 들끓었다.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들은 1인 시위와 집회 참여에 나섰고, 급기야 자퇴서를 제출하고 변호사시험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사법고시생들은 삭발로 맞서며 사법시험 영구 존치를 주장했다. 이미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두고 급기야 법조계는 두 갈래로 갈라졌다. editor. 박소희

# 사건 25시



2015년  
12월 03일  
11:00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하고 대안 마련" 발표**  
2017년에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고 발표한 법무부

2015년  
12월 03일  
12:00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성명서 발표**  
전국 25개 법전문원 원장 일동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2015년  
12월 03일  
12:00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발표**  
사시존치에 대한 국민의 뜻은 한시적 사시존치가 아닌 '조건 없는' 사시존치라고 밝히며, 국가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2015년  
12월 03일  
14:00



**25개 법전문원 재학생 6,000명 집단 자퇴 결의 발표**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남은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집단 자퇴하기로 했으며, 자퇴 결의 발표.

2015년  
12월 04일  
09:00

**[사설] '사시 폐지' 사회적 합의 법무부 멋대로 깨나**  
사시폐지 유예 파문, 법무부 문책론  
"법무부 발표는 일권행위"  
참을 수 없는 법무부의 가벼움

**"사시폐지 유예 최종결정 아냐"… 하루만에 입장 번복한 법무부**  
유관기관의 반발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하루 전에 발표한 사법시험 4년 유예 방안에 대해 관련기관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15년  
12월 04일  
16:00



**법전문원 교수들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  
25개교 법전문원 교수들은 법무부가 주관하여 2016년 1월 시행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결의문 발표.

2015년  
12월 06일  
13:00



**한국법조인협회 법무부장관 퇴진 운동 성명서 발표**  
한국법조인협회(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로 구성)는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퇴진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

2015년  
12월 07일  
13:00



**서울대 법전문원생, '사시 유예 철회' 1인 시위 돌입**  
서울대 법전문원생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법무부 등지에서 일부 재학생들의 자발적 1인 시위 시작.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전면 철회와 법무부 장관 사과를 요구.

2015년  
12월 07일  
11:00



**사법고시생 서울대 법전문원 학생 자퇴서 수리 촉구 회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서울대학교 법전문원 행정실을 찾아 "서울대 로스쿨은 폐법을 쓰는 학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하라"며 자퇴 수리 촉구서한을 전달.



2015년  
12월 07일  
13:00



### 사법고시생 삭발식 진행

사법고시연구회와 사시존치국민연대 등 사시 관련 모임 회원들은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시 폐지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

2015년  
12월 08일  
13:30



### 이상민 법사위원장, 법전원 원장단 면담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한 법전원 원장 9명은 국회를 찾아 이상민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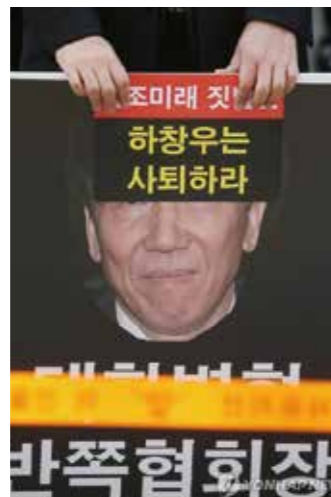
2015년  
12월 08일  
16:00



### 25개 법전원 학생들이 '자퇴서' 제출 완료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결정 방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퇴서를 제출하기 시작해, 8일 오후 전국 25곳 모든 법전원 학생들이 자퇴서 제출을 완료.

2015년  
12월 09일  
12:00



###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 퇴진 촉구

한법협 소속 및 법전원 재학생 120여명은 대한변협회관 앞에서 "사법개혁 망치고 로스쿨변호사 탄압하는 대한변협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사퇴촉구 시위.

2015년  
12월 10일  
12:00



### 황우여 교육부 장관, 전국 법전원 원장과 간담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법전원 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무엇보다 반발하는 법전원 학생들이 학업으로 복귀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힘.

2015년  
12월 10일  
15:00



### 전국 25개 법전원 재학생 6,000명 '제2차 전국 로스쿨 법무부 규탄대회'

25개 법전원 재학생들은 과천정부청사에 집결해 법무부를 규탄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정부의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 특히 이날 집회는 '사법개혁이 죽었다'는 의미로 장례식 형태로 열렸으며 변호사시험 수험표 화형식도 진행.

2015년  
12월 10일  
16:30



### 대법원 "사시존치 여부, 협의제 만들어 논의해야"

대법원, "국회와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시존치 여부, 법전원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입장 발표.

2015년  
12월 12일  
10:00



### 전국 법전원 재학생, 검찰실무시험 거부

전국 법전원 학생 1,000여 명이 학사일정 가운데 하나인 '검찰실무' 기말고사에 집단 결시. 2·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15명이 결시하고 10명만 응시한 것으로 집계.

2015년  
12월 14일  
10:00



### 경북대 법전원 노형은 학생 단식투쟁 시작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청난 약속이며 2017년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하의 날씨 속에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한 노형은 학생.

2015년  
12월 16일  
10:00



### 법전원 원장단, 전국 25개 법전원 학생회장 간담회 개최

법전원 원장단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2015년  
12월 16일  
16:00



### 법전원 원장들 “변시 출제 협력·학생들 학업 복귀” 호소

전국 25개 법전원 원장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월로 예정된 변호사시험 출제에 협력하겠다”며 “법전원 학생들도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힘.

2015년  
12월 17일  
10:00



### 법전원 학생들, 사시폐지 요구 릴레이 도보 대장정 시작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와 4년 유예 철회를 요구하며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나선 법전원 학생들. 17일 오전 9시 동아대에서 시작한 도보 대장정은 2016년 1월 4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종합청사에 도착하면서 마무리 될 계획.

2015년  
12월 17일  
13:00



### 연세대 법전원생들 “대통령님 사시 폐지 약속 지켜주세요”

연세대 법전원 재학생들이 현행 변호사 시험법대로 2017년 사법고시를 폐지해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

2015년  
12월 19일  
18:00



### 황우여 교육부 장관 “사법시험 폐지 법전원협의회 지지”

교육부는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전원협의회 입장을 지지하며, 법전원 소속 교수들의 변호사시험 출제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힘.

2015년  
12월 21일  
10:00



### 법전원생, 내년 변호사시험 시행중단·취소소송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법전원 학생들이 내년 1월4일 예정된 시험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냄. 이들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

2015년  
12월 21일  
16:00

### 법전원 학생들 “23일까지 대책없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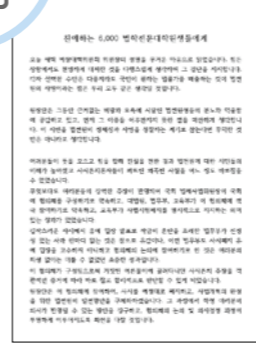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가 23일까지 이 사태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를 결행할 것”이라고 밝힘.

2015년  
12월 24일  
10:00

### 법전원학생협의회, “1,886명 중 1,000여 명 위임 철회”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노형은 위원장은 “더는 변호사시험 거부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23일 오후부터 자체적으로 위임장 철회 신청을 받음.

2015년  
12월 24일  
18:00



### 법학전문대학원장단 성명서 발표 “친애하는 6,000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법전원학생협의회와 학교 복귀 의사에 따라, 법전원 원장단의 성명서 발표, 힘든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한 학생들의 결단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15년  
12월 28일  
09:00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학업 복귀 시작

사진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헤럴드경제, news1, 법률저널

200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출범한 지 어느덧 8년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2017년에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당위성 없는 주장으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사법시험은 왜 폐지되어야 하며, 그들의 주장에는 어떤 허점이 있는지 살펴봤다. support.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법률에 정해진대로 2017년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 1. 사법시험 폐지의 당위성

**법령에 의거** 2009년 4월 29일 변호사시험법 제정 시 사법시험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법률 제9747호, 2009.05.28 제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충분한 논의의 결과** 사법시험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995.01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도입 법전원 도입 추진	2003.10 사법개혁위원회 출범
1999.0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2005.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1999.12 사법연수원 제도 폐지 및 한국사법대학원 설치에 관한 사법개혁안 발표	2007.07 국회 통과 [제적 187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8명, 기권 20명]
--	--

**국민과의 약속** 지난 7년간 국민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믿었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법률을 신뢰하여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사회에 진출하거나 아예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전원생들의 사법시험 응시도 금해졌습니다. 법전원이 설치된 25개 대학교는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과대학을 폐지했으며, 25개교에 입학하는 학부생들은 법과대학이 없어 다른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 2. 사법시험 존치 주장의 허구성

법학전문대학원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법시험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전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지 문제투성이인 사법시험이 그 보완책이 될 수 없습니다.

Q. 사법시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인가요?

A. 사법시험은 수험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합격률이 겨우 2.94%에 불과합니다.

\_ 1981~2014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등학교(졸업, 재학, 퇴학) 학력 소지자는 0.1%(19명)

\_ 2006~2014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등학교 학력소지자는 0.05%(3명)

※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만 사법고시 응시 가능, 제1차 시험에서 토익 점수 700점 이상 요구

A. 사법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원강의, 고시원 비용 등의 생활비 외에도 월 14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어 가난한 사람도 의지와  
실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법적으로 선발인원과 장학금을 보장합니다.

특별전형을 통해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 및 장애인 등을 매년 입학정원의 6.25%(131명) 선발해 이들에게는 전액장학금 지급(총 894명 선발('09~15년): 재학생 444명 등, 변호사 334명)

2. 타 대학원보다 실질등록금 평균이 제일 낮습니다.

• 2014년도 법전원 등록금 수입의 358억원(37.6%) 장학금 지급  
- 전체 학생의 70.6% 전액 또는 일부 장학금 지급

• 법전원 연간 실질등록금 최저 4,013천원 평균 8,944천원 최고 13,998천원  
- 경영 평균 16,989천원 → 의학 평균 12,294천원 → 법학 평균 8,944천원  
- 법학 평균 등록금이 경영의 50% 수준, 의학의 70% 수준  
- 미국 평균 50,000달러(한화 5,700만원) 일본 평균 150~250만엔(한화 1,520만원~2,500만원)

3. 법전원생은 고루 분포되어 있고, 분위순 경제적 사정만 고려해서 차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학생중 70.6%가 장학금 혜택)

〈장학금 수혜자 분포표〉

구 분	기초수급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기 타
인 원	262	661	281	208	182	166	127	147	210	247	441	730
비 율	4.4	10.9	4.7	3.5	3.0	2.7	2.1	2.5	3.5	4.1	7.3	12.1

※ 법전원에서는 소득분위 6분위(1,887명)까지 50%이상 장학금 지급, 그 이하 소득분위도 차등 장학금 지급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문호확대 방안

##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발표회 요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최봉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에서 추진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2015.11.16. 서울 중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했으며, 연구책임자인 김재원 교수가 발표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도입 시기

- 2016년 6월말 이전에 관련 법령 개정
- 2016년 12월 말까지 학교 선정
- 2017년 선정 학교 개교 준비  
2017년 사법시험 폐지
- 2018년 3월 야간·온라인 로스쿨 개학  
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이전에 합격률을 응시자의 80% 이상으로 함

### 2. 학교 선정 및 입학 정원

- ※ 총 6개교: 입학 정원 총 450명 신규 인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50명, 법학과 존속)
  - 서울 + 경기 + 강원권 (75명 정원 2개교)
  - 영남, 호남(제주도 포함), 충청권(각 권역별 50명 정원의 3개교)
- ※ 2개 학교 이상이 연합하여 야간 로스쿨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
- ※ 기존 25개 로스쿨 중 야간 로스쿨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는 심사를 거쳐 인가를 변경  
(위 6개교 및 450명 신규 증가 인권 외)
- ※ 야간 로스쿨 인가 학교는 야간 수업 및 온라인 강좌로만 운영하고 주간 로스쿨 병행 운영을 금지함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 야간 로스쿨은 2018년 3월부터 법학부 학생 모집을 중단함

### 3. 입학전형

- ※ 주간 로스쿨 입학전형과는 다른 기준 마련
  - 응시자의 사회 활동, 경력, 가족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원동기 및 학업 계획에 중점을 두고 평가
  - 학부 성적 및 어학점수는 가산점 요소로만 반영하고, 필수 평가요소에서 제외
  -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학교별로 최저 점수 컷으로만 활용
  - 면접 점수를 총 평가 점수의 40% 정도 반영

### 4. 등록금 및 장학금

- 수업이 야간에 이루어짐으로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실무가들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여 등록금을 주간 로스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책정
- 성적 장학금제도는 폐지하고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장학금 지원

### 5. 교육과정

- 총 90학점 이상 이수: 수학기간은 최소 8학기
- 필수 및 기본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 그 외 교과목은 온라인 수업 혹은 다른 야간 로스쿨 수업의 학점을 총 30학점 이내에서 인정
- 수업시간은 주중 저녁 7시~10시 50분 및 토요일 10시~4시 50분 + 온라인 강좌
- 등교는 주중 2일 + 토요일로 가능하게 강좌 편성
- 학업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시험 과목 등 주요 과목에 한해 PASS/FAIL 및 완화된 상대평가 실시
- 모의재판, 인턴, 엑스틴십 등 비교과 수업은 토요일과 휴가 중에 집중 실시
- 교육/강의 조교 및 상담전문가 확보
- 육아시설 및 보육교사 / 지원 인력 확보

### 6. 학적 이동

- 야간 로스쿨 학생은 다른 야간 로스쿨로 편입을 허용하고 주간 로스쿨에서 1년간 30학점 이내 학점 이수를 허용
- 주간 로스쿨 입학자는 1회에 한해 야간 로스쿨로 편입을 허가하며 이 경우 야간 로스쿨의 정원 외로 하되, 해당 주간 로스쿨의 결원 보충을 허용하지 않음. **창**

지난 7월 1일, 대법원 대강당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을 졸업한 신입 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이 거행됐다. 임명된 법관 중 법학 전공자는 14명(3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의과대, 물리학과, 공대, 경제학 등 타전공자로 이루어졌다. 이들 중 학부시절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해 한때는 목회자를 꿈꿨던 서청운 판사를 서면인터뷰를 통해 만나봤다. editor. 박소희



##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있으면 어떠한 변화 속에도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서청운 판사

**Q. 법관 임명 당시 '신학 전공자'라는 타이틀로 이슈가 됐다. 목회자에서 법조인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계기가 있나?**

**A.** 신학은 인간의 정신과 영적인 부분에 대한 학문으로서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법학은 그 자체로 인간의 삶과 사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작용합니다. 신학이 인간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영역이듯이, 법학은 인간의 사회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영역이므로, 신학과 법학은 어떤 면에서 같은 방향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학이 개인의 권리보호와 사회정의실현에 더 충실하다고 생각되어 법조인이 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Q. 전남대 법전원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A.** 고향이 전북이라 아무래도 전북대 로스쿨을 고민했었는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면서 인권과 소수자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인권법 특성화 학교인 전남대 로스쿨을 선택하였습니다. 전남대 로스쿨은 저에게 '희망의 사다리' 이자 마음의 고향입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첫발을 내딛었던 곳이기도 하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아주 고마운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Q. 법전원 입학 후 생소한 법을 뚫어 때문에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 비법학도의 공부 방법은?**

**A.** 로스쿨에 입학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한자 공부였습니다. 법전이나 법서의 한글의미도 어려운데 한자를 잘 모르니 처음에는 한자 밑에 한글을 수기로 적어서 계속 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1학년 성적이 재학생 100명 중 60등정도 한 것을 확인하고 중간은 했다며 기뻐했습니다. 법학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여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잘하게

**서청운 판사 프로필**  
 총신대학교 신학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1회  
 前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재판연구원  
 前 광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現 사법연수원 법관 연수중  
 (2015.7.1.~2016.2)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선택형은 기본서를 여러 번 반복해 읽어서 눈에 익숙하게 하고, 사례형은 문제만 보고 답안지를 직접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쉽게 지치게 되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스터디그룹을 조직해서 매일 진도별로 나누어 공부하고 서로 확인하는 것이 긴 수험생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Q. 법전원 재학 중 특별하게 관심 있었던 분야는?**

**A.** 특별히 학회활동은 하지 않았고 신우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해서 같은 소망을 품고 있던 학생들끼리 모여 기독교 모임인 LinC(Lawschool In Christ)를 조직했습니다. 초대 부회장을 역임했었는데

매주 모여서 나눔과 섬김을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고, 회원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이끌어 주는 관계가 있어서 힘든 로스쿨 생활에도 크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우회에서 시험 기간마다 건강음료를 챙겨서 동기 원우들에 나눠주곤 했었는데 나눔을 실천하면서 제가 먼저 회복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Q. 재판연구원으로서 보낸 시간은 어땠나?**

**A.** 2년 동안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민사부에서 근무하며 주로 민사법, 회사법, 보험법, 건설 분쟁 등 관련 사건에 관한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도제식으로 교육받으면서 서면 작성능력과 법리 이해력, 사건 해결능력 등 많은 영역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연구원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법관이라는 직분의 의미와 사명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당사자의 모든 삶이 걸려 있기도 하고, 국가와 사회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엄중한 책임감 속에서 다른 직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법관이 되고 싶다는 꿈도 품게 되었습니다.

**Q. 작년 7월, 37명의 법전원 출신 법조인이 판사로 임용됐고 약 6개월이 지났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나?**

**A.** 아직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약 8개월 정도의 연수기간이 부여되었는데 이 연수는 기존의 연수와는 달리 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덕목, 그리고 직무능력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약 6개월 동안 실제 재판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사법적 가치를 고민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법리를 적용해 사안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논증을 통하여 사실인정도 해보고 기존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Q. '판사'라는 직업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A.** 판사는 다수결에 의한 권력이나 수시로 변화하는 여론에 좌우됨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소수의 편에 서지 않더라도 다수결로 대변되지 않는 소수자들이나 정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데, 이를 통하여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Q. 판사의 길을 가려면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가?**

**A.** 먼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교 재학 중에는 택배나 과외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했었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 하나로 꿈을 이뤘습니다. 앞으로 법관 임용 절차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있으면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비법학사로서 판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재판연구원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검토하며 얻을 수 있었던 사실관계 파악 능력과 서면작성 능력, 법률지식, 다양한 경험 덕분입니다. 필기시험에 관하여 조언을 드리자면 필기시험만을 위하여 교과서나 판례를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실무에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무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향후 계획과 인생의 최종 목표는?**

**A.** 우선 지금은 10년 후에 내가 어떤 법관의 모습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재판의 본질에 적합한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과 덕목을 갖추어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륜, 균형감각을 갖추어 당사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공정하게 재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재판 외에서도 청렴하고 경솔히 행동하지 않는 법관상'이 현재의 저의 10년 후 목표입니다. [▶](#)

## ‘돈스쿨’ 아니다... 70%가 장학금



이형규 원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난 3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2021년 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믿음의 법치’를 강조하던 법무부가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으나 그 여론이라는 것이 고작 1000명에게 한 전화 설문조사였다. 여론조사의 핵심 문항도 사법시험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 편파적인 질문이었다.

이런 전화 설문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4년 뒤에 똑같은 논란이 재연될 것이다. 다만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하루 만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이 최종 입장은 아니라고 번복했다.

로스쿨제도는 1995년에 논의가 시작돼 2009년에 도입됐다. 오랜 기간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고시낭인의 발생, 전공에 관계없이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타 전공 학부 교육의 파행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법조인으로 선발되기 어려운 구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역량 있는 법조인 배출의 한계 등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함께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법률을 신뢰했던 수많은 학생이 준비하던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사회에 진출했거나 아예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로스쿨생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금지됐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서는 법과대학을 폐지했고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을 진학하는 학부생은 법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법률을 믿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66  
고시망국론을 불러일으켰던 사법시험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당연히 폐지하고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법조인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99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이고 사법시험은 전공 교육과 관계없이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다.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전공에 관계없이 사법시험 준비에 몰려드는 학생이 증가할 것이고 심지어 로스쿨 학생마저도 사법시험을 보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는 물론 과거의 ‘고시망국론’에서 제기됐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로스쿨에 대해 ‘돈스쿨’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지만 이는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 우선 등록금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전체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500만원인데 장학금이 평균 630만원이므로 실질 등록금은 연평균 890만원이고 한 학기에 500만원이 채 안 된다. 이는 일반 대학의 학부 등록금과 비교해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2014년도에 전체 학생의 15.8%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며 전체 학생의 70% 이상이 장학금을 받았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 역시 실제 사실로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로스쿨은 입시에서 특별전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일정한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로스쿨에는 소위 ‘금수저’들만 입학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로스쿨에는 연 소득 2600만원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2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로스쿨의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사정만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사법시험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로스쿨이다. 로스쿨 제도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그런 문제점이 사법시험 존치로 해결될 수는 없다. 이제는 고시망국론을 불러일으켰던 사법시험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당연히 폐지하고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법조인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창](#)

출처: 서울신문 2015-12-10 29면

# 베트남 하노이 실무수습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조명현



66

한 달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제한된 지면에 모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왔다.

99

2014년 여름, 어느새 2학년이 되어 실무수습을 나가야 했다. 기왕 수습을 나갈 바에 2주간의 형식적인 실무수습이 아니라 실제로 일선에서 일을 하며 배우고 싶은 생각에 이런저런 수습 프로그램 공지를 보고 고민하던 중,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주관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법조 인력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마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해외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중국, 동남아 등의 지역에 진출한 국내 유수의 로펌의 분사무소, 외국계 로펌, 또는 국제기구의 산하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수습생을 선발한다. 평소에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압박한 국내 법조시장 전면 개방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학교는 국제통상법 특성화 로스쿨이고, 그에 따라 훌륭한 교수님들의 관련 수업이 많이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및 필수 법학 과목을 이수하면서 틈틈이 국제거래법 내지 영어로 되는 수업을 이수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들었다.

다만 어느 곳으로 지원을 해야 할 지 막막했고, 학교에서는 아직 다녀온 사람이 없어 정보 수집이 어려웠던 차에, 마침 베트남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신 동아대학교 신충일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셔서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당시 베트남에는 총 4개의 국내 로펌(울촌, 지평, JP, 그리고 로고스)이 각 북부에 위치한 행정수도 하노이, 그리고 남부의 경제요충지 호치민에 지사를 두고 있었다.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잡힌 호치민보다 최근 들어 개발이 한창인 하노이에 가서 한번 부딪혀 보고 오는 것이 어떻겠냐는 신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지사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서류 전형은 학점, 자기소개서, 어학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소개서에는 기본적인 학업 성취도 이외에 국제거래 특성화 관련 수업 이수와 외국어 구사능력을 강조했으며, 베트남 시장의 현황, 법률시장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예비법조인으로서의 포부 등을 나름대로 열심히 녹여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법무부에 제출하는 1차 전형에 합격하면, 2차 전형으로 각 로펌에서 개별 면접을 보게 된다. 면접은 2일에 걸쳐, 오전·오후 총 4조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한글면접과 영어면접이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면접 전형에 영어 면접에 대한 언급이 정확히 없어 별 생각 없이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면접 보시는 변호사님께서 한글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다 갑자기 영어로 질문을 하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 1. 준비 과정 및 출발

선발인원도 적어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합격 통보를 받았다. 기말고사가 끝날 즈음해서 본사에서 실무수습생 오리엔테이션 일정이 잡혔지만, 우리 학교 시험이 다소 늦게 끝나는 편이라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시험이 끝난 이후 별도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담당 변호사님께서 KOTRA에서 제작한 베트남 동향서, 그리고 생활 및 근무에 대한 이런저런 유용한 정보를 주셨다.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총 4주 근무 배정을 받았기에,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로 바로 출발해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받았던 오리엔테이션 때 받았던 동향서와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모 외국계 로펌에서 제작한 베트남 동향서를 읽어보는 것 이상의 준비는 하지 못했고, 옷가방과 노트북만 챙겨 하노이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 2. 근무 시작

로고스 하노이 지사에는 지사를 대표하시는 한국변호사님 한분(이하 대표님)과 5명의 베트남 변호사님들까지 총 변호사 6분과 그 외 스텝 분들이 상주하였다. 수습생 부임 신고,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여권 및 신분 확인 등 형식적 절차를 거치고, TIME TABLE 작성 요령 등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자리 배정을 받고 곧바로 근무에 투입되었다. 마침 그 기간 중에는 베트남인 수습생이나 한국에서 온 다른 수습생이 없이 나 혼자 뿐이라, 대표님과 부대표님을 제외한 나머지 4분이서 골고루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지도변호사를 맡아주시기로 했다. 대략적인 근무패턴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인턴이 제출해야 할 공통 과제가 주어진다. 대략적으로 소개하자면, 첫째, 잘못된 영문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 관하여 계약서 조항별로 5가지 정도의 최근 사례를 리서칭하여 매주 금요일 퇴근 시간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2학년 1학기 때 학교에 개설된 English Contract Drafting 강의를 들었는데, 그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둘째, 해외투자 사기에 관한 최근 사례를 5가지 리서칭,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매주 금요일 퇴근시간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셋째, 한베타임즈





등 7가지 정도의 교민 신문 및 소식지에서 법률 뉴스 및 칼럼을 정리할 것. 전임 인턴이 지난 겨울까지 해놓은 것에 이어 대략 6개월치 신문을 모조리 읽고 정리하다보니 저절로 베트남의 대략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잡혔다. 네 번째가 핵심 임무였는데, 주회사 내부의 Taskforce 프로젝트 자료의 정리 및 번역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서약 때문에 쓸 순 없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테마 정도는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베트남 개정 노동법 하위법령 정리, 합작회사 청산절차 안내서 제작, 그리고 베트남-WTO logistics 안내서 제작 등이었다. 특히 logistics 안내서는, 베트남법도 잘 모르는데다 무엇보다도 WTO에 대한 공부도 짧아서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다. 몇날 며칠을 WTO 홈페이지를 보고 끙끙대며 고민하고, 대표님께 몇 번이나 지적을 받아 보고할 때마다 긴장하며 했던 기억이 난다. WTO 체계에 관련하여서는 훗날 반드시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신세계를 접하는 느낌이었다. 그 이외에는 주로 그때그때마다 변호사님들이 부탁하시는 문서 작성, 이메일 번역 등을 하게 된다. 시키는 일이 대부분 실제로 사무실에서 수입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안건들이라 재미가 있다. 베트남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려는 한국회사들이 주된 클라이언트들이다. 대기업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려 한다. 사전 문의 없이 들리는 클라이언트들도 꽤나 많다. 베트남은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순수 외자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고 회사가 합작회사의 형식으로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3. 언어의 문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G\*\*\*\*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한국어로 서면과 구두 모두 완벽하게 해낸다. 농담 같은 일상 대화도 가능할 정도로 능숙하게 한국어를 다룰 줄 안다. 유일하게 한-영-베 3개 국어가 자유자재인 분이라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무실의 핵심 인물이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다른 모든 변호사들은 한-영 / 영-베 2종의 번역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을 단숨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효율이 아닌가. 외국어 구사능력의 힘은 그만큼 강력했다. 한편, 그렇다고 해서 언어적 장벽 때문에 해외 진출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확실했다. 어차피 기본적인 생활영어야 금방 익숙해지고, 막상 해외에서 법률가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법률가의 일의 대부분은 문서 작업이 아닌가. 로스쿨 입학 전에 4년 동안 영어 강사로서 주로 작문과 문법, 독해 위주의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읽고 쓰는 일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었으나, 영미권 국가 거주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나 역시 말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막상 부딪혀 보니 언어의 장벽은 생각 이상으로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만국 공통어는 영어가 아니라 '서투른 영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차분하게 포박포박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대신 임무로 맡은 문서 작업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정확하게 해내야 하리라.

### 4. 생활

아침은 호텔에서 주는 밥을 먹고 나오고, 점심은 대표님께서 별도로 초대를 하시거나 팀 점심이 있는 날이 아니면 베트남 스텝 분들과 친해질 겸 식권을 받아 대우호텔 직원 식당에서 먹었다. 퇴근 후에는 슬슬 걸어 다니며 주변 구경을 하다가 마음 가는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것이 나의 하루 일과였다. 호텔에서 주는 아침밥은 주인아주머니 기분에 따라 포(쌀국수) 아니면 토스트였는데, 후식으로 주는 '카페 쓰어 다' (연유가 들어간 베트남식 아이스크림)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귀국할 때 커피를 많이 사들고 들어갔는데, 집에서 타먹어 보아도 그때 그 맛은 나지 않았다.

베트남 커피 생산은 최근 브라질을 제치고 1위를 할 정도로 유명하고, 국민들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커피를 즐겨 마신다. G7이라는 베트남 브랜드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가격도 한 박스에 1달러 정도 밖에 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갈 때 캐리어에 한가득 담아 왔다. 주말에는 사무실이 있는 Badinh District를 벗어나 다른 쪽 하노이시를 구경하곤 했다. 베트남도 변호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야 영어를 잘하지만, 특히 관광지역이 아닌 로컬 사람들은 영어를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동네 슈퍼마켓이나 세탁소에 가서 주인아저씨께 영어로 말을 건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아무런 연고 없이 혼자 돌아다니고 밥을 사먹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데, 주로 바디랭귀지나 스마트폰의 힘을 빌려 해결하곤 했다. 정말 스마트폰은 인류 문명을 바꾸었다 평가받을 정도의 엄청난 발명품이다! 나처럼 사전 준비 없이 큰 목표 하나만 정하고 무작정 걸어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g\*\*gle map과 NA\*\*R 등의 도움은 어마어마했다.

### 5. 귀국 그리고 맺음말

이방인 티를 내지 않고 제법 자연스럽게 거리에 녹아들 수 있게 될 때 즈음, 어느덧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직 미숙하고 아둔하여 그 대가를 짐작할 뿐이지만, 나는 베트남과 거대한 동남아시아 시장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고 돌아왔다고 감히 생각한다. 이미 법무법인 JP 하노이 지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동아대 로스쿨 2기 선배님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곳에는 할 일들이 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 고작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해주신 로고스 하노이 사무실 식구들과 정이 많이 들어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 감사하게도 아직도 매달 꼬박꼬박 사내 소식지를 보내주신다. 그 중에 S\*\*g 변호사님은 올해 한국 출장 기회가 있어서 서울에서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모두 훗날 소중한 인연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 달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제한된 지면에 모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왔다. 우리는 아직 변호사하면 송무 변호사를 떠올리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거대 법률 시장 변호사의 대다수는 자문 업무를 하는 변호사이다. 해외 진출 법률가로서, 지역 전문가가 되어 나라를 펼쳐보는 것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다. [창](#)



# 사시존폐 논란에 대한 단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박경선



66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99

한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몇 년 간 연락이 되지 않은 적이 있다. 나중에 술자리에서 만난 그 친구는 자신이 희귀한 병에 걸렸었고, 그 치료약으로 막 개발된 신약에 대한 인간의 첫 부작용이 자신에게서 나타나 세계 의학계에 보고가 되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지금은 잘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당시에 나는 아픔을 나누지 못한 미안함과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동시에 왜 신약 개발에 있어서 임상 실험이 완벽하지 못했을 까하는 의구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은 결국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이었다. 실험의 대상이 인간인 때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 또래들에게는 시험제도와 관련하여 유난히 이러한 실험이 많았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소위 수능등급제가 시행되었고, 많은 비판과 함께 단 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도가 되었다. 결국 당시 수험생들은 교육제도에 있어 실험쥐가 되었던 것이다.

슬프게도 이때 입시를 준비하던 - 특히 법학과를 지망하던 - 학생들에게 찾아 온 또 하나의 비보가 있었으니, 바로 2007년 7월

3일 국회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건국 이후 이 땅에서의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였던 사법시험 제도와 사법연수원 교육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간직하고, 새로운 대학원 형식의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로서의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러 정치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 대립이 크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에게는 이왕 관련 법률이 생겼으니 이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내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거나 로스쿨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는 선택지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곧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였다.

나 역시 법학과를 지망하며 수능공부를 하던 와중에 로스쿨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법과대학의 마지막 학번인 08학번이 되었다. 당시 내가 선택한 선택지는 유예기간 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학과 동시에 시작한 법과대학 학생회 활동을 누군가 계속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어 나갈 후배가 없던 터라 껌냥도 되지 않던 내가 학생회장이란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회연석회의를 이끌게 되었다. 사라진 법대를 살리고,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에 대

한 재고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른 학교 학생회와 함께 원고들을 모아 로스쿨인가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사자적격이 없다 하여 각하판결을 받았다. 신입동 고시생들을 모아 헌법소원도 제기해 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하여 각하였다. 그 이후에 법대 선배들이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청원도 해보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회의원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만났던 헌법재판관 출신의 법대 동문회장의 말씀처럼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렇게 로스쿨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리라고 믿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취소소송의 패소로 인해 대표자였던 내 명의로 된 몇 천 만원의 비용청구서만을 고이 간직한 채,

오래된 제도의 폐지 및 유예의 시간임에 동시에 새로운 제도의 정착의 시간 동안 나는 학생회 활동으로 인해 공부의 길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주변의 동료들이 걷는 길을 잘 볼 수가 있었다. 누군가는 유예기간 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갔고, 누군가는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길에 모험을 걸었고, 누군가는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제3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감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곧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길을 걸을지 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길을 포기한 것을 다시 제도가 변함으로 인해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같은 불안이었다.

어릴 때부터 법조인을 꿈꿔왔던 나 역시 이러한 불안의 레이스에 발을 담가야 했고, 연수원에 있는 선배들,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선배들과의 상담을 거쳐 오랜 고민 끝에 로스쿨에 진학했다. 학부 시절 공부에 소홀했던 자신을 채찍질하며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2학년 생활까지 무사히 마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2월 3일, 법무부는 몇 주 전 공청회에서 당한 망신을 만회라도 하기 위해서인지 사법시험의 유예기간을 기존의 8년에서 4년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 이 입장 발표 자체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


니었지만, 법무부의 입장은 국회 법제사위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엄청 났다.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은 남은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했고, 집단 자퇴서 제출, 검찰실무 시험 거부, 변호사시험 거부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이익들이 충돌을 하며 각종 분열이 일어났다. 10년 사이에 법조인 선발을 위한 제도가 또 다시 실험에 의하여 요동을 친 것이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친구들과 반대하는 친구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서로 칼을 겨누는 것을 보면서, 한때는 함께 모여 술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불안을 감싸주던 친구끼리 왜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 것인지, 누가 이 싸움을 원한 것인지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제도에 대한 시비가 왜 그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시비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가장 안정성을 중시하는 법이라는 분야의 기술자들을 뽑는 시험 제도가 가장 불안정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물론 절대적으로 옳은 시험제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어떤 시험제도를 택할지, 어떻게 개선할지는 시험을 주관하는 측에 일정 부분 재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개개인이 투자하는 몇 년의 시간은 결코 무시하지 못할 무게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행히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단체를 포함한 협의체가 마련된다고 하니, 이 협의체에서 확실한 결론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4년 추가 유예와 같은 어설픈 결과는 4년마다 이러한 진통을 겪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확실하게 하나의 제도를 정하고 그 개선점에 대하여 고민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곧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공익과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개개인의 사익을 모두 지키는 길일 것이다.

흔히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설계에 있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사법시험, 아쉽지만 이젠 작별할 때



김화진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회에서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병행, 즉 사시 존치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시 존치가 로스쿨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로스쿨에 대해서는 '돈스쿨'이니 '현대판 음서제'니 하는 여론 흡수성이 매우 강한 왜곡된 이미지가 고착되어 왔다. 그런 이미지의 반복 구현을 통해 사회구조에 대해 형성되는 우려와 분노가 실체와 관계없이 로스쿨에 표출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모든 문제에 직접 이해당사자들 만큼 깊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같이 쉬운 도식은 쉽게 접수되고 표현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다시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다. 누군가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광고 캠페였다면 큰 성공작이다.

우선 로스쿨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법조 진출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통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전형과 장학금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이 법률가가 되는 길은 훨씬 넓어졌다. 서울대의 경우 2015년 신입생 기준으로 가구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학생은 28명(18%)에 달했고 2015년 2학기 인원 대비 장학금 수혜율은 45.7%다.

등록금은 일반 대학원보다 비싸지만 로스쿨은 3년 과정이고 9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 대학원은 2년 과정이고 대개 24학점을 이수한다. 대학교육 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법률가 모델은 대학과정의 전문소양을 갖춘 후 법학교육을 받게 한다는 입법적 결정의 소산이다. 즉, 그러한 투자는 필요한 것으로 하지는 사회적 합의다. 무엇이든 비용과 투자가 전혀 필요 없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가치는 투자와 상관관계를 갖는다.

취업에서 집안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이것이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로스쿨의 문제로 보는 것은 좀 엉뚱하다. 계층 고착화라는 사회 전반의 문제다.

사시는 아쉽지만 떠나보내는 것이 옳다. 물론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았던 제도다. 특히 공정성의 대명사로 여겨서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대학입시와 함께 유례없이 깨끗했던 제도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유수의 인재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법률가가 되기 위한 자질을 사시로만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시 시절, 법학공부는 학교 밖 사설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기이한 형태였으며 대학의 전 학과에서 혼자 힘으로 시험에 매달리는 학생의 수가 상당했다. 현대와 미래 사회의 복잡하고 새로운 법률문제는 그런 과정으로 양성된 법률가상과 맞지 않는다.

'희망사다리'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과 조급한 영재들이 사시를 선택하는 순간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퇴색될 것이다. 존치규모에 따라 전 캠퍼스의 고시원화가 재연될 위험도 있고 대학교육 전반에 왜곡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 '선의의 경쟁'을 이야기하지만 취지와 내용이 다른 두 제도의 경쟁은 성립되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는 과거형 법률가 경력 추구가 비중을 높이면서 로스쿨이 동력을 상실할 위험도 있다. 사시 폐지는 수년 전 예고된 것이다. 입법기관이 내린 엄중한 결정이며 로스쿨은 그 결정에 의한 미래예측을 기초로 운영되어 왔다. 존치된다면 법률의 내용을 전제로 많은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손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법률가가 되려 하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지향 모델을 설정하고 제도를 통해 사회적 진전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제 사법시험을 역사의 훌륭한 한 페이지에 담아 잘 떠나보낼 때다. **창**

출처: 머니투데이 2015-11-06

## 사시존치론, 조선 말 과거제 집착과 비슷하다



천경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라가 망해 가던 19세기 말, 조선에 상비군이라고는 8000명이 안 됐다. 이웃 나라들은 수백만의 서구식 군대를 키우던 때다. 군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쓸 만한 기술자도 전문가도 없었다. 나라 꼴이 이러니 힘 한번 못 써보고 고꾸라진 게 놀랍지 않다. 그러면 조선 땅의 그 많은 인재는 다 무얼 하고 있었는가. 과거시험을 보고 있었다. 늙어서 노망이 나도록 되지도 않는 과거시험을 붙잡고 있었다. 일본과 굴욕적인 강화도조약을 맺은 지 3년 뒤인 1879년, 정시문과 응시자 수만 21만3500명이었다. 15명이 합격했으니 경쟁률은 1만4000대 1. 합격자 평균 연령은 세종 때 20대 후반이었으나 고종 때에는 38세였다. 평균수명이 40세가 안 되던 시절이다.

정약용, 이익 등 선각자들은 과거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과거제 찬성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을 것이다. 과거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결국 1894년 갑오개혁에서 과거제가 폐지됐지만 조선이 근대화의 격랑에서 살아남기는 이미 늦었다. 개천에서 난 용들은 나라를 구하긴커녕 대개는 친일파가 되었고 더러는 향리에 숨었다.

우리 민족은 왜 그렇게 과거제에 집착했을까. 왜 지배 엘리트조차 그 폐해를 끊는 결단을 하지 못했을까. 오랫동안 가졌던 의문에 대해 답 아닌 답을 얻었다. 21세기의 법무부도 7년 전에 법률로 정한 약속을 홀랑 뒤집어 사법시험 폐지를 연기하겠다는 걸 보니, 깜깜하던 19세기에 어찌 다른 선택이 가능했으랴 싶다. 과거제는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상대로 동일한 시험을 치러 성적으로 선별한다는 아이디어는 근대 문명의 다양한 전문가를 길러내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진국의 주류적인 엘리트 충원 방식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이 됐다.

건국 초부터 대한민국은 고시로 법률가를 선발했다. 의대를 안 나와도 의사고시만 붙으면 의사가 되던 시절도 있었다. 교육시설과 역량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의학이나 법학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시험 한 방으로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 한국이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양성'을 택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결단이었다. 역사적 사명을 다한 사법시험 제도는 이미 7년 전 법으로 정해놓았듯이 예우를 갖춰 작별 인사를 하면 됐다. 7년 차에 이른 로스쿨을 더 좋게 다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느닷없이 사시 폐지를 4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여론이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한다는 이유다. 여론이 그런 건 당연하다. 정확한 속사정을 모르는 국민들로서는 사시가 가지는 역사적 상징성과 형식적 공정성을 저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화도조약 후에도 20만 명씩 과거를 봤던 시험지상주의가 우리 DNA에 새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19세기 말의 여론도 압도적으로 과거제 존치였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론에 따라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여론조사만 봐도 사시 존치에 찬성한다는 답변과 폐지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합치면 109%나 된다. 존치할지 물어도 예, 폐지할지 물어도 예라고 답한 사람이 꽤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설문에는 사법시험에 대한 미사여구가 붙어 있어 공정성 시비도 있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여론대로 결정한다면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여론조사에만 따른다면 미국산 쇠고기는 매년 수입 금지와 허가를 반복해야 할 것이고, 학교 급식은 무상인지 유상인지 학기마다 새로 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로스쿨의 문제점도 많고 개선할 것도 많다. 교육의 질도 손봐야 하고 교수들도 각성해야 한다. 그러나 사시 존치는 그 해결책이 전혀 되지 못하고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제 와서 사시 신규 응시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사시의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로스쿨 본연의 기능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다. 필자는 22년 전 합격했던 사시와 훌륭한 교육을 시켜준 사법연수원에 애뜻한 고마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이제 사시는 예정대로 역사 속으로 고이 보내고 로스쿨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정녕 사시 존치가 필요하다고 믿었다면 공청회에서 당당하게 근거를 밝히고 토론해야 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입장을 유보하다가 신기남 의원 건으로 로스쿨 비난 여론이 비등한 시기에 기습 발표를 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대법원이나 교육부와도 전혀 의견 교환이 없었다. 발표문에서는 어떠한 비전도 찾기 어렵고 그저 허술한 전화 여론조사의 등 뒤에 숨었을 뿐이다. 반대 목소리에 놀라 하루 만에 최종 의견이 아니라고 물러섰지만 그 속내는 모른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다. 그 무책임과 비겁함이 슬프다. **창**

출처: 중앙일보 2015-12-07, 33면

## 사시를 넘어서 약속된 미래로



김현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전 서울변회 회장

사시 폐지 문제가 법조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법조 3륜이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예비 법조인들까지 공부를 하다 말고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다. 법조계 내부의 갈등이 이토록 심화됐던 적은 없었다. 국회와 대법원, 정부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시존치 여부를 재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반복 자체가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사시의 문제점이 극복되지 않았기에 사법개혁이 거론됐다. 사시 기수문화를 바탕으로 법조 카르텔을 형성해 전관예우를 낳는 문제가 있었고, 연 880억 원의 혈세가 사시 제도에 투입되는 반면, 양성되는 법조인 중 극히 일부만 공직에 진출하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또 사시 합격률이 2.94%에 불과하고 97%의 응시자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도 못한 채 고시낭인으로 전락했으며, 대학의 법학교육은 도외시한 채 신림동 고시촌의 고액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것이 병폐였다.

이를 개혁하고자 1995년부터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필두로 범국가적인 논의를 거쳐 2007년에 로스쿨 제도가 시행됐다. 이러한 사법개혁은 사시 폐지를 전제로 했고, 다만 사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을 배려해 무려 2017년까지 유예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자퇴서를 쓰고 거리에 나가 있는 로스쿨 학생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할 때의 일이다.

그들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조인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정부가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입법으로 약속한 것이다. 모범적인 학생들이 착실하게 공부해 로스쿨에 진학했고, 성실하게 법률을 익히며 법조인으로 봉사할 날을 꿈꾸고 있었다. 만약 사시가 존치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누가 로스쿨에 진학했겠는가?

사시존치는 법조계 기수문화가 공고하게 유지됨을 의미하고, 그 속에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지위는 온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불안한 자리를 어느 청춘이 꿈꾸었겠는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면면을 보면 법조 기득권을 고집하는 세력과 고시촌 상인,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법대 교수, 로스쿨 제도에 아직 편입되지 못한 수험생들 뿐이다. 이들은 사시의 폐해는 돌아보지 않은 채 로스쿨에만 칼을 겨누고 있다. 이미 폐지하기로 한 사시가 존치돼야 한다면 사시의 폐해를 시정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들이 대책도 없이 음서제 등 근거 없는 낭설로 국가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흔들고 있는데, 법조 3륜이 흔들린다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들의 억지 주장에 흔들려 사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국가가 어떤 제도를 내놓든 로스쿨의 경우를 떠올려 아무도 국가를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든 몇 년 후 억지 주장으로 다시 예전으로 회귀해야 한다면 국가 정책을 바꾸려 들 것인데, 그런 사회에서는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힘들다.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첫째, 약속대로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 사시 권력이 계속하여 승계된다면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 사시를 존치 또는 유예하겠다는 것은 사법개혁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주입식 암기 위주의 과거 시험과 흡사한 시험만 합격하면 일약 개천의 용으로 승천한다는 낡은 출세지향적 구도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일 뿐이다.

둘째,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로스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로스쿨이 철저하게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며 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반면, 로펌 등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때에는 여전히 가정환경 조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셋째, 로스쿨 재학생들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데, 선배 법조인으로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크다. 하루 빨리 학교에 복귀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다해야 한다.

넷째, 오랜 유예기간 동안 사시 합격의 꿈을 이루지 못한 수험생들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이들에게 무한정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장학금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로스쿨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조성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창**

출처: 내일신문 2015-12-14

## 사법개혁 원안유지를 외치며 \_ 집회 현장에서



김광현 학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안녕하세요. 동기, 선배, 후배 로스쿨생분들. 저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김광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술자리에서나 뵈 줄 알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뵈게 되어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비도 추적추적 오는 바람에, 좋은 날에 여의도에 책이나 들고 와서 공부나 한 번 해볼까 했던 생각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네요.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봄에 이런 자리를 한 번 경험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과천이었네요. 저는 당연히 그 때가 아마도 제 로스쿨 생활에서 또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 집회가 아닐까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기분이 묘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있을 곳도, 제가 있을 곳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학교겠지요. 내년은 3학년이라 부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신 3학년분들에게 큰 고마움을 표합니다. 서울이 아니라 멀리 지방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그냥 친구가 말하는 이야기, 동생, 오빠 또는 형이 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법조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법시험을 쳐야겠다고 생각했고, 슬슬 준비해볼까 했던 찰나에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군대로 떠났고, 다시 돌아와서 로스쿨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첫 해는 리트를 망쳐서 1년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녀보기도 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지금의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한 이후에 저는 법 공부도 법 공부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법시험을 치려고 했던 저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걸까요. 사실 저는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고작해야 10년이 채 안된 제도입니다. 사법시험의 많은 부분을 보완해내기는 했지만, 아직도 바뀌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소리도 듣고, 실력이 없다는 소리도 합니다. 억울한 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주변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덕분에 아마 로스쿨 제도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죠. 7년 동안, 특히나 학사나 교무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원했던 원치 않았건, 방통대, 야간 로스쿨에 대한 논의가 등장했고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

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교수님들 정원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실력이 부족하다면 로스쿨 재학기간이 1년 정도 늘어날지도 모르지요.

여러분이 다니는 동안에도 로스쿨은 지속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개혁의 원동력은 모두 상실될 것입니다. “로스쿨은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답이 “그럼 사시 보면 되겠네. 사시 있잖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사시가 병존한다면, 로스쿨은 로스쿨의, 사법시험은 사법시험 대로의 적폐를 그대로 가진 채 쪽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살아생전에는 로키니 사시충이니 하는 어린에 장난 같은 다툼이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후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식들도요. 그럴 거면 차라리 로스쿨을 아예 다시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이 타당합니다. 비록 법조계에 대한 신뢰수준은 지금처럼 콜롬비아 수준으로 유지되고, 고시낭인의 발생이라는 문제는 여전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시생도 그러한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7년 전에,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이라는 것이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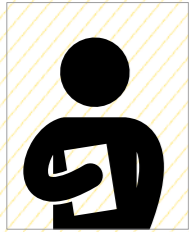
재밌는 것은 그저 법조인을 꿈꿨더니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세에 이미 수저가 모두 도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비난에 있어서 한창 유행하고 있는 수저론을 덮어씌운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성취를 실재보다 높게 평가해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탓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순진하게 공부나 열심히 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남들에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 했던 얕은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협이라니요. 당신들을 꿈꿨던 사람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법을 신뢰하고, 법대로 되리라 믿고 법을 공부하러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왜 금수저 소리를 듣고 돈으로 자격증을 샀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샘 때는 더 모르겠고, 아마 앞으로도 잘 모를 겁니다.

저희를 매도하고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고시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7년을 드렸습니다. 7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모두 거치신 분들, 또는 이제와 사라질 것이 명백함을 알았음에도 1-2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갑작스레 ‘사법시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갖는 신뢰가 보호 가치 있는 신뢰입니까. 아니면 법이 있음을 알고 법을 믿으며 입학한 우리들, 그리고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입니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6천명, 리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8천명입니다. 단순히 숫자상으로 비교해도 누구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시다가,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희를 근거 없이 매도하며 자격증을 돈으로 사려한다고 하십니까. 수능도 본고사로 되돌리실 생각이십니까? 차라리 과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주장일, 길게 말해야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에도 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잡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몸조리 잘 하셔서 학교에서 다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사석에서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

## 로스쿨 재학생이 본, 사법시험 폐지



익명의 재학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0년대 후반의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비리'를 기억하시는지요? 사건브로커들이 유치장 등에서 대기하면서 사건을 수입하고, 검찰이나 법관들한테 일명 '떡값'을 건네주는 계지의 관행화 돼 있었는데 이게 표면화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 기소가 제대로 될 리 없고, 판결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담당 검사·판사랑 같은 대학, 같은 연수원 기수인 사람, 같은 고등학교인 사람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전관예우'가 당연시 돼서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법조계가 비리로 가득 차니 시민사회계에서는 새로운 법조환경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됐고, 전국의 대학에 법조배출 통로를 만들어 놓자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로스쿨'제도였습니다. 이렇게 로스쿨 제도는 여야 빅딜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 민변 등이 주축을 이룬 시민사회계가 합심했고, 이들이 이루고자 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발점은 구태였던 사시 출신 인원의 배출 방지였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사시폐지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시가 폐지되지 않았으니, 이 법은 제대로 시행도 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법개혁을 위한 발도 제대로 못 댄 상태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과 이권이 관련된 사람들이 '로스쿨은 돈스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시폐지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림동 원룸주인·독서실 주인, 신림동 주민들, 고시에 발을 깊숙이 들여놓은 장수생들,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시출신 청년 변호사 등입니다. 솔직히 돈이 없으면 '고시 장수생'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사법시험 공부를 오랫동안 못하는 사람들 중 매년 5~10% 이상씩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에는 동의하며, 이러한 고비용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니까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로스쿨 제도는 법조개혁의 큰 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출신들 중에 사건사고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법시험 출신 중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봐야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이 아직은 많지 않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임료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콧대 높던 변호사들도 서비스 정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엔 변호사들이 사건을 골라서 진행했지만, 최근 변호사 수가 증가됨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어졌고, 저는 이러한 현상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조인은 사회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워서는 개인은 물론 사회가 병폐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제도를 쥐고 흔들면서 왜 법조개혁이 되지 않았냐고 이야기 한다면 로스쿨 출신은 억울할 것입니다. 올해 사법시험이 57회였으니 5,60년 동안 생긴 폐단을 이제 막 법조계에 발 담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두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고 변호사 숫자가 더욱 많아지면서 점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법조 문화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시 출신에 비해 실력이 없다는 비난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한해에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났으니, 그 전에 비해서 실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시를 통해 200명 이하로 뽑다가 500명, 700명, 1000명씩 뽑기 시작하니, 기존 법조인들이 1,000명 세대한테는 '발로 써도 사시 붙는 거 아니냐'는 우스개소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미 배출된 로스쿨 변호사들 중 상당수는 법조인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3년이면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는데, 10년 이상 걸려 법조인이 배출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였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적은 글이 다소 로스쿨 편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법조계가 갖고 있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정착도 하기 전에, 근거 없이 비난 받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 몇 글자 적어보았습니다. **창**

출처: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 침해자의 입장에서 본 저작권침해에 대한 두가지 대응책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박상흠 변호사

### 1. 들어가는 말

암살과 코리안메모리즈, 도쿄올림픽 엠블럼 디자인, 윤은혜 의상.. 이들의 공통점은 표절시비로 얼룩진 사례들이다.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지적재산권의 소중함이 더해지고 있다. 지식이 새로운 자본의 요소가 된 새시대에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는 지적재산권법의 법언은 그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우리의 일상속에서도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경고장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 어떤 내용증명을 열어보니 어떤 법무법인에서 나 또는 내가 속한 기관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예컨대 폰트체)를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최고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일반인은 깜짝 놀라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당황하기 십상이다.

최근 IT생태계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대형기관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무단사용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컨대 대학기관은 특히 사냥꾼들의 먹잇감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들은 특정 법무법인과 IP 추적업체와 협약을 맺고 침해자들을 발견한 후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여 과도한 구매대금을 요구하곤 한다. 이들은 저작권법은 양벌(양자처벌)규정이 도입되어 있어서 저작권침해자와 침해자가 속한 법인 모두를 처벌하도록 한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의 저작물을 침해액보다 10배이상에 해당하는 폰트 패키지를 강매를 요구한다.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침해자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한다.

### 2. 현실법 체계 하에서 대응방안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고소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자가 하였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가 혹은 저작권법이 대리권을 부여한 자 외에는 고소대리권이 없다. 해서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대리행위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저작권 권리자가 적법한 위임을 하지 않고 법무법인과 수익배분 등을 통한 업무를 할 경우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를 한 변호사법의 위반사항이다. 만약 법무법인가 위임하지 않고 권리자가 위임한 저작권침해 적발 추적업체간에 수익분배를 계약한 경우 역시 변호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하게 된다.

예컨대 내가 특정 폰트프로그램을 구매하였으나 해당업체에서 구매범위에 벗어난 다른 서체를 사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해명할 수 있다. 판매업체는 약관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약관설명무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변하고, 나는 단지 계약위반을 했을 뿐 저작권침해에 이르는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에 분쟁조정신청이란 제도가 있다. 신청취지를 적절히 작성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기일이 지정되고, 해당기일에 담당판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과 함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한자리에 앉아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조정의 과정에 공신력이 작용하게 된다. 또한 독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현실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벌금액과 손해배상액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불법다운로드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건당 수십만 원에 불과하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다. 무심코 다운받은 한 개의 파일은 지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여 불법다운로드는 절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대학교와 같은곳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공공기관의 전산소 같은 곳에는 사용대장과 업무일지를 상시적으로 비치하여 법인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해야 한다.

### 3. 저작권법 개정차원에서의 대응방안

그러나 이같은 우리가 이와 같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저작권자들을 대항하는 법무법인은 민사소송을 동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작위로 침해자들을 추출해낸 다음 일률적으로 내용증명을 뿌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을 한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게 될 사건수임료와 소송에 투입될 시간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권리자와 법무법인의 이익의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소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소의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고소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침해자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피소된 이는 형사건으로 입건되어 담당경찰관의 소환통보가 오게 된다. 그런데 피의자의 신분을 가진 자는 누구나 겁을 집어먹게 되어 주홍글씨가 새겨진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고소인의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의 저작권법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수단으로 한 권리보전이 아닌 형사법의 처벌조항에 의한 보호방법에 치중하고 있는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저작권법의 형사법화는 저작권침해의 범람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침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도구로 오용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선의의 사용자 예컨대 과실로 인하여 다운로드를 받은 청소년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무래도 그 법적 정당성에 있어 대중들의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좀더 논의의 전개를 확장시켜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자면 저작권법의 형사처벌 조항이 상당히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처벌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호한 내용의 조항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있다.<sup>1)</sup>

우리 저작권법은 제11장 '벌칙' 중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37조(부정발행 등의 죄), 제138조(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제139조(몰수), 제140조(고소), 제141조(양벌규정)을 형사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저작물 침해는 다수의 불특정 일반 공중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전원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보다는 선별적인 처리가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선별적인 처벌이 아닌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고소<sup>2)</sup>가 가능하고 고소남발의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청소년은 고소를 당한 후 당황한 나머지 자살을 하기 까지 하였다. 이같은 부작용을 축소시키기 위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 고소장각하 제도가 등장하였으나 형사 처벌의 남발을 줄이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예컨대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하여 피상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침해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복제나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다는 사실 또는 최소한 복제나 배포의 대상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는 점과 저작권침해의 높은 개연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층적인 판단을 해야 함에도 이는 간과한 채 복제, 전송 등의 행위가 있으면 고의가 있다는 식의 피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판례가 있다.<sup>3)</sup>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저작권법에 광범위하게 산재된 모호한 처벌조항을 구체성을 띤 조항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와 경미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나누고 저작권침해사항과 공정이용에 관한 사항을 분류시키는 체계화 작업 또한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업적 목적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반이용자의 행위에 관하여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제136조 제1항과 달리 장래 입법에서는 그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작권침해에 대해 비친고죄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의사불벌죄 제도를 활용하여 침해자에게 합의를 통한 형사처벌 모면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소추의 개시가 피해자 의사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자. 셋째, 인터넷 상 불법다운로드의 범람에 대처하기 위해 송신이 명백하게 위법함에도 수신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복제부과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 66

동아대 로스쿨 재학시절 편집장을 맡은 일을 가장 보람스럽게 생각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체특성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영업은 잦병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쓰기 일과 쉽게 설명하는 법률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장차 나의 꿈은  
법률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99

### 4. 결론

형사처벌의 목적은 위하력, 일반예방효과, 특별예방효과 등으로 나누는데 언뜻 보기에 한국 저작권법이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때 형사처벌의 주목적은 특정 범죄자의 범죄재발방지보다 일반예방이론에 초점을 두어 사회일반인의 범죄예방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형사고소가 남발되고 심지어 고소인은 과도한 합의금 명목으로 피의자에게 강매를 요구하는 등 권리남용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부딪히게 될 때 먼저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하나 좀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형사처벌 조항의 모호성과 일률적인 처벌에 대한 극복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극복을 위해 비교법검토와 사회구성원의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저작권법의 개정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지면상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 과정에 맡겨두기로 한다. 창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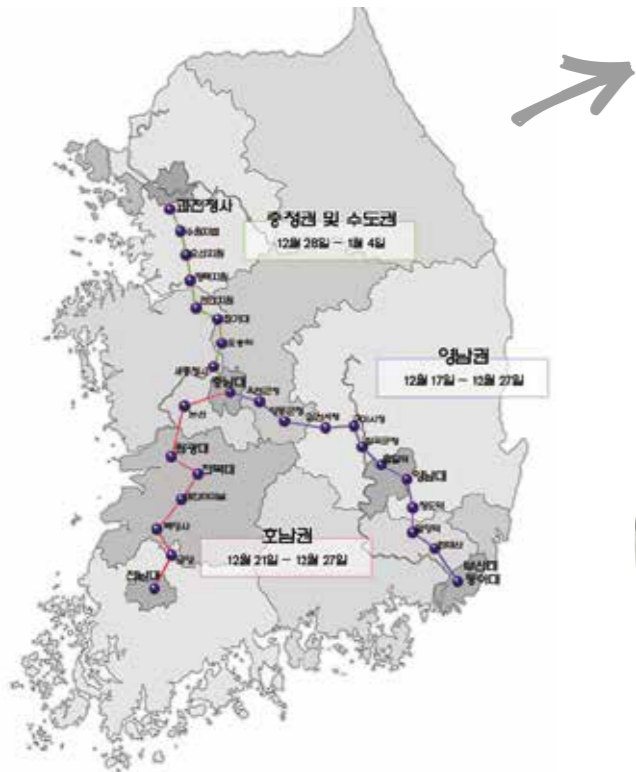
1.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저작권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상조, 권영준, 박준석
2. 대한변호사협회 질의회신

- 1) 이하의 논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상조, 권영준, 박준석 참조
- 2) 법무법인의 고소는 2012년의 경우 7만건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대검찰청 범죄 통계, www.spo.go.kr)
- 3) 대법원 1996.3.22. 선고 95도 1288, 대법원 1992.6.23. 선고 91도 2101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나섰다. 12월 17일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변호사시험이 예정된 1월 4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에 도착한다는 계획으로 시작된 릴레이. 무엇이 그들을 총 731km의 대장정에 동참하게 했을까?

## 사법개혁을 향한 한 걸음, 로스쿨 릴레이 도보 대장정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매일 30km 이상씩 걷는 강행군이 이어졌다. 끼니는 길 위에서 패스트푸드로 때우기 일쑤였고,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여관에서 불편한 잠을 청했다. 그 누구도 릴레이에 참여하라고 등 떠밀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떠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그들의 손에는 '사법개혁 원안유지'라는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고, 커다란 피켓에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바람이 적혀 있었다. 릴레이 도보 대장정은 1월 4일 법무부 도착으로 막을 내렸지만, 사법 개혁을 위한 그들의 릴레이는 계속될 것이다. [창](#)



“사법개혁 원안유지”



“사시제기 유예는 사법개혁 포기다”



“당신의 이웃엔 변호사가 있나요?  
누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 로스쿨”

“거센 의 용? 희망의 사다리?  
3%에 가려진 97%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까?”



### MINI INTERVIEW



릴레이 도보 대장정 제안한  
김상욱(영남대 법전원 6기)

Q. '도보 대장정' 행사를 기획한 이유가 있나?  
A. 각 법전원별로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법전원의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많지 않다. 마침 경북대 노형은 학우가 과천 청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도보 대장정을 통해 그곳까지 가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몸에 현수막을 두르고, 피켓을 들고 걸어 다니면 로스쿨에 대한 오해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봤다.

Q.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인가?  
A. 그렇다. 물리적으로 참가하기가 어려운 강원대, 제주대를 제외하고는 많은 학교의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무엇보다 학생회에서 주도한 행사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참여해준 학우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헤게모니의 이동,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예술의 탄생

\_ 로이 리히텐슈타인, 행복한 눈물

한 여자가 울고 있네요. 그런데 만화인 줄 알았더니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그림이지요. 이 그림은 삼성 특검 사건을 통해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가격은 거의 100억이었지요. 심지어 아래 도판에서 보시겠지만 In the car라는 작품은 200억이고, Ohhh...Alright란 작품은 무려 500억에 달한답니다.

이 작가는 원래도 유명했지만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사람들은 이 작가를 더욱 궁금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가의 이름입니다. 미국 뉴욕출신 작가이며 1960~70년대에 활동했습니다. 소위 '팝아트' 장르(또는 '키치')의 대표 작가지요. 리히텐슈타인이 유명 작가가 된 것은 역사적, 지리학적 연원을 따져야 합니다. 반 고흐 아시죠? 고흐 이전까지는 즉 1900년대 이전까지는 세계적 미술의 중심이란 (물론 서양 중심에서) 유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역사란 유럽대륙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러다 미국 신대륙이 점차 개발되어가면서 유럽의 사람들이 점차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주로 범죄자나 가난한 이민자의 도전적 이민이 많았지요. 아직 미국은 문화적 중심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터지면서, 나치를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유럽의 각국 문화계 유명인사들과 부호들이 미국으로 대거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화와 사교의 중심지는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예술은 유럽예술 양식을 모방하거나 그 유럽예술가들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미국 고유의

예술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표현주의나 인상파와 같은 유럽의 양식을 그대로 하면 차별점이 없겠죠? 그 전에도 물론 현대미술의 태동이 있었지만 이후로 소위 말하는 "현대미술"이 미국에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CIA가 냉전시대에 미국 현대미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미국만의 예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히려 유럽인들이 멸시하는 천박함, 배금주의, 속도, 대량생산, 저렴함, 값싼 즐거움 등이 미국 예술의 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소위 키치 예술이지요. 핵가족화, 인간의 물질 속 고독, 물질주의 등 말입니다. 그리고 덩달아 기존 예술 문화 사조의 파괴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과거를 부정해야 현재 자신들에게 문화 중심의 헤게모니가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미술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부정하고, 기존의 양식을 파괴하며, 해체적이고, 기괴하고, 남들과 차별점을 이루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예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의 선대의 예술작품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최대한 스승의 기법을 배워서 따라서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가이고, 수묵화를 그릴 때 선배들의 도안을 베껴서 연습하면서 기법을 익히는 소위 장인 정신 문화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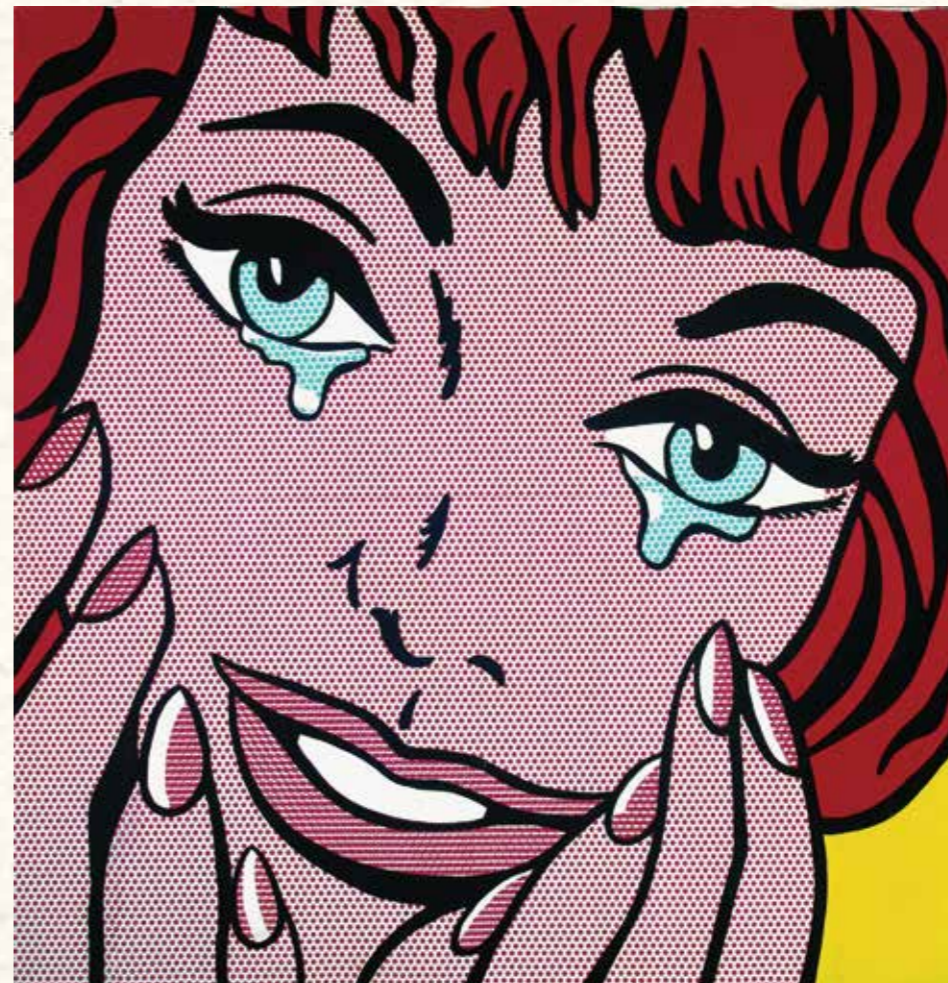
그러나 그 전부터 유럽 고흐 시대때부터 파괴적인 속성은 있었으나 이 시기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기존의 양식을 파괴하고 독자적인 자신만의 기법과 겹치지 않는 양식, 스타일이 대두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문화 고유의 fast food 같은 특



In the car, 1963



M-Maybe, 1965



Roy Lichtenstein, Happy Tears, 1967-68



저자소개 김별다비 경감, 변호사, 큐레이터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롯데박물관 큐레이터, 아르코 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엘지전자 개인정보 compliance task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로 3년여 근무하다 예술인의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에 뜻을 두고 2기 경감 특채로 선발됐다. 3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변론부문 전국우승을 한 바 있다. 대안공간 정다방, 리각 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술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월간 BizArt지와 한국박물관협회지에 미술법 칼럼을 쓰고 있다.

그림출처 위키미디어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품과 생애 http://blog.naver.com/jsasm1944/80155457645

만화 속에서 길을 찾다, 팝아트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 http://blog.naver.com/itwoman/110020406574



Ohhh...Alright..., 1964

성까지 추가 됩니다. 그것의 정점이 바로 팝아트입니다. 앤디 워홀 같은 작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도 바로 그 정점에서 나타난 작가입니다. 그 후대로 가면 갈수록, 예술작품은 아름다워야 한다기보다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어떤 사조와 주장 개념을 가지고 세상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이 더 부각되기는 했습니다.

팝아트는 통속적인 이미지를 미술로 수용한 사조로 1960년대 초기에 미국에서 발달해 왔습니다. 또한 팝(pop)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파퓰러(popular)의 약자로 보는 경향이 유력합니다. 이러한 팝아트의 이미지는 광

고, 상표, 만화, 영화, 사진 등의 대중적 이미지를 한 번 더 보기 위한 재현으로, 대중적인 것을 수용하는 현대 인간의 감수성을 의식화한 것입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는 주로 만화를 소재로 그렸습니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어벤저스 등 마블에 나타나는 그 미국 만화 그림체 말입니다. 심지어 말풍선 효과음도 따왔습니다.

왜 리히텐슈타인이 중요한 현대미술 작가일까요?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고도화 될수록 “개념미술”로 진화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은 걸으로는 단순 미국문화를 반영해 새로운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가

장 미국적이면서도, 현대미술의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술이란 카메라와 같이 대상의 복제였던 것이었지만, 현대미술 즉 사회적 메시지를 포함한 “아이디어”의 조형적 표현으로 연결하는 다리였기 때문에 미술사조에 아주 굵은 흐름으로 남은 작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작을 그대로 따라했으므로 저작권 위반이고,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어떻게 미술인가, 특히 만화를 베낀 것이 말인가 싶은 것이 당대의 그리고 지금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궁금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디어” 그 자체가 작업인 리히텐슈타인에게는 그것 자체가 작업\*인 것이었습니다. 만화를 베끼는 그 자체 말입니다.

\* “작업”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 전시대 미술은 “그림painting”이었지만 현대미술부터는 “작업Work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Work 즉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것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현대의 미술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리히텐슈타인의 “아이디어란” 이런 것입니다. 일부러 대중에게 친근하고 흔하고 저렴한 “만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한 장면을 크게 확대해서 더욱 원색적으로 단순화해서 “고귀한” 갤러리에 딱하니 걸어 놓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을 차용하자면 리히텐슈타인 작품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술”입니다. 미국의 현주소를 미국적인 매체인 미국만화를 통해 다루면서, 예술에서의 유럽식 엘리트주의, 장인정신을 거부하고 저급문화로 고급문화를 허물어내며 민중적인(?) 손짓을 하였던 것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작업방식은 직접 붓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색면을 칠한 후, 공판화처럼 구멍을 뚫은 판을 이용해 색점을 칠합니다. 이로써 인쇄물에서 드러나는 망점 효과를 보여주는데 이를 Benday-Dot(인쇄업자 ‘벤데이’ 라는 이름에서 유래)라고 합니다.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닌 기계적인 행위를 통해 인간의 행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Look Mickey, 1961



WHAAM, 1963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로이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미술학사, 석사를 따고 10년을 미술교사로 일했습니다. 종종 전시회를 뉴욕에서 열기는 했지만 크게 인기를 얻지는 못했고, 60년까지 그는 계속 무명의 작가이자 단지 미술교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키마우스를 좋아하던 로이의 아들이 “아빠는 만화보다도 못 그러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충격받은 로이는 Look Mickey를 그려 뉴욕의 당시 신진 갤러리인 Leo Castelli 갤러리(지금은 엄청 유명한^^)에 전시하게 됩니다. 미키마우스 뿐 아니라 만화 주인공들을 대상으로 하여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레오 카스텔리라는 딜러의 역할은 대단하기는 했죠. 나중에 그런 저런 얘기가 또 글을 통해 나오겠지만, 유명 아이들은 유명 기획사가 있듯 유명 작가는 유명 딜러가 뒤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시를 통해 로이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물론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에서 가장 형편 없는 예술가”로 지목되기는 했지만요. 이후 70-80년대 로이는 이 그림체를 발전시켜 지금의 행복한 눈물까지 오게 된 것이죠. [참](#)

## 툭아보기

대한민국에 '88만 원 세대'가 있다면, 일본에는 '잃어버린 세대', 유럽에는 '700유로 세대'가 있다. 오죽하면 불안정한 고용·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파견직·실업자·노숙자들을 총칭하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는 용어가 나왔을까. 불안정한 (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이 용어에서 볼 수 있듯 불안정 계층은 점차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editor. 박소희

[어학사전] '툭아보기'는 '살살이 툭아가면서 살피보다'라는 순 우리말로,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뒤지면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 근로기준법 찾아보게 만드는 영화&드라마

# 사장님, 나빠요!

## 카트 *Cart*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의." '마트의 생명은 매출, 매출은 고객, 고객은 서비스'를 외치며 언제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온갖 컴플레인과 잔소리에도 꾀없이 웃는 얼굴로 일하는 '더 마트'의 직원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게 된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관전 포인트] 시작부터 짱하다. 귀 기울여야 할 우리들의 이야기.  
[한국 영화 / 2014.11.13. / 104분]

## 송곳 *Piercer*

'송곳'의 마트 안 첫 풍경은 활기차다. 하지만 곧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이 결정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회사의 압박은 심해지고 급기야 노동자들은 인간적 모욕까지 받는다. 이에 푸르미 마트 '이수인' 과장과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 상담소장 '구고신'의 도움을 받아 노조를 조직하고 정리해고에 대항한다. 점장은 노조에 가입할 경우 진급도, 임금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협박하는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관전포인트] 원작만큼 촘촘한 구성이 돋보이는 웰메이드 드라마. 스스로 '송곳'이 되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음을 일깨워준다.  
[한국 드라마 / 2015.10.24.~2015.11.29. / JTBC / 12부작]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A Single Spark*

17세의 나이로 피복공장 재단사로 취직한 전태일. 닭장같은 평화시장 안에서 빛도 못보고,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며, 각종 병을 앓다가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며, 전태일은 연민과 분노를 느낀다. 그는 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절망한 그는 마침내 분신을 선택하여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고 숨을 거둔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8조(오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관전 포인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한국 영화 / 1995.11.18. / 96분]

## 모던타임즈 *Modern Times*

공장에서 하루 종일 나사못을 조이는 찰리. 눈을 뜨고 있는 시간에는 오로지 나사못만 조이다보니 급기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조이려 하는 강박증까지 생겨 정신병원으로 가게 된다. 산업화의 물결로 노동법에 대한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 공장 안에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는 수 백명의 노동자들이 있으며,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즐비하다. 물질문명과 기계 만능주의로부터 비롯되는 인간소외를 희극적으로 그려낸 영화.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관전포인트] 나사를 조이고 조이다 기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찰리 채플린. 아, 웃프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 영화 / 1936 / 86분]



## 설국열차 *Snow Piercer*

기상 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 살아남은 사람들을 태운 기차 한 대가 끝없이 궤도를 달리고 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바글대는 빈민굴 같은 맨 뒤쪽의 꼬리칸,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이 술과 마약까지 즐기며 호화로운 객실을 텅굴고 있는 앞쪽칸. 열차 안의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꼬리칸의 젊은 지도자 커티스는 긴 세월 준비해 온 폭동을 일으키고, 앞쪽칸 엔진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한다. **창**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관전포인트] 오늘도 세계라는 열차는 달리고 있다. 엔진을 멈추고 밖으로 나갈 것인지, 안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 [한국 영화 / 2013.08.01. / 125분]

문화가 산책  놓치면 후회하는 전시 & 공연

땅을 지키는 수호신을 의미하는 'Genius Loci'에서 유래한 용어 '천재'(genius). 보통 사람에 비해 선천적으로 뛰어난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일까. 천재들의 손끝에서는 생애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명작들이 탄생하곤 한다. 2016년 상반기에는 그들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놓치지 말 것!



공연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3층  
전시기간 2015.11.29.(일)~2016.03.13.(일)  
관람료 성인 1만 3천원, 청소년 1만원  
홈페이지 <http://sema.seoul.go.kr/>

## 20세기 최고의 영화 거장 스탠리 큐브릭 展

영화사상 가장 혁신적인 영상을 창조해낸 감독 중 한 사람인 스탠리 큐브릭. 그의 대표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1968)는 특수효과의 교과서라 불리며 인류가 달에 착륙하기 이전에 우주의 사실적인 영상미를 보여주었다. 이어 그는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시계태엽 오렌지>(1971), <배리 린든>(1975), <샤이닝>(1980), <폴 메탈 자켓>(1987), <이즈 와이드 셋>(1999)과 같이 영화 역사에 남을 중요한 작품들을 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큐브릭의 영화 세계에 관람객이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스펙터클한 규모에 내러티브를 강화함으로써 큐브릭 효과를 배가했으며 조형적 연출기법으로 영화와 시각미술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 또한 음악을 중요한 영화적 장치로 간주한 그의 의도를 살려 주요 사운드 트랙을 전시실 내부에서 재생하여 큐브릭의 걸작들을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리히텐슈타인박물관 명품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

이번 전시는 대표적인 루벤스 컬렉션이자, 유럽 최고의 왕립박물관 중 하나인 리히텐슈타인박물관의 소장품 약 120여점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이다. 루벤스, 반다이크, 브뤼헬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플랑드르 작가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국내 최초로 전시되며, 네덜란드 황금기에 탄생한 다양한 장르화들과 동시대 이탈리아 거장의 작품들도 선보인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부터 바로크, 근대 비더마이어 시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시기의 예술작품들을 수집해 온 리히텐슈타인왕실 컬렉션의 역사를 체험해 보는 색다른 공간도 마련되었다. 이른바 '쿤스트캄머(예술의 방)'의 재현을 통해 회화, 조각, 공예, 가구 등 수집의 의미를 지닌 특별한 작품들을 직접 감상해 볼 수 있다.



전시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기간 2015.12.12.(토)~2016.04.10.(일)  
관람료 성인 1만 3천원, 대학생 및 청소년 1만 1천원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

# Musical

브로드웨이의 감동을 그대로

## 넥스트 투 노멀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은 평범해 보이지만 각자 가슴 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다. 가족 구성원들의 아픔과 화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넥스트 투 노멀'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내며 찬사를 얻었다.

탄탄한 스토리라인과 극의 전개를 극대화하는 3층의 철제 구조 무대세트와 캐릭터 감정을 살려주는 라이브 음악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공연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공연기간 2015.12.16.(수)~2016.03.13.(일)  
관람료 R석 8만 8천원, S석 6만 6천원  
홈페이지 <http://www.doosanartcenter.com/>

# Performance

불멸의 명작

## 에쿠우스

연극 '에쿠우스'는 현존하는 최고의 극작가 피터 셰퍼의 대표작이다. 영국에서 말의 눈을 쇠꼬챙이로 찌른 소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신, 인간, 섹스에 대한 고민과 인간의 잠재된 욕망을 담아낸 작품이다. 1975년 초연 이래 강태기, 송승환, 최재성, 최민식, 조재현 등 최고의 배우를 탄생시킨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초연 이후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새로운 추가 캐스팅이 공개돼 기대감을 높인다. 조재현과 류덕환이 그 주인공이다. 마흔의 나이에도 알런 역으로 열연했던 조재현은 지난 2009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다이아트로 분한다.

지난 2009년 공연에서 난폭함 뒤에 가려졌던 순수함과 맑은 영혼을 표현하며 주목 받은 바 있는 류덕환은 광기 어린 17세 소년 알런 역으로 돌아온다. **창**



공연장소 DCF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  
공연기간 2015.12.11.(금)~2016.02.07.(일)  
관람료 R석 5만 5천원, S석 4만 5천원, A석 3만원  
홈페이지 [www.dmcf.co.kr](http://www.dmcf.co.kr)

# LAWSCHOOL NEWS



## 1.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발표회

11월 16일(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을 위한 발표회가 열렸다. 좌장은 최봉철 원장(성균관대학교 법전원)이 맡았으며, 김재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전원)의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강경선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김은실 사무원(좋은이웃 종합법률사무소), 박현경 교수(영산대학교 법률학과), 임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진운)의 토론이 이어졌다.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교육 기회비용 때문에 기존 주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직장인, 유사 법조직역 종사자, 경력 단절 여성 및 가사노동 담당자 등에게 입학문호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될 계획이다.



## 2. 법무연수원 간담회

11월 19일(수) 법학전문대학원 대회의실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연수원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외 법학전문대학원장 17명과, 임정혁 법무연수원장, 용인분원장 등 법무연수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법전원 자체 역량 강화 방안, 검찰실무 학점의 통일적 운영 등 법전원 발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3. 법조인윤리선언 선포식

11월 25일(수) 서초구 엘타워에서는 '법조인윤리선언' 선포식이 개최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1년 6개월간 다양한 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윤리선언을 제정했다. 윤리선언에는 ▲인권옹호와 정의실현 ▲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른 행동 및 부정배격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와 국민 전체의 권리 보호 ▲지위와 권한의 남용금지 및 경력과 개인적 인연의 부당한 이용 금지 ▲경청·배려하는 자세 및 성의·정성을 다한 직무수행 ▲윤리의식 고양과 윤리규범의 철저한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창](#)

# 로스쿨이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인 이유

## “조선시대의 과거시험도 양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p>사시 합격자들을 연수시키는 데에는 매년 880억의 세금이 든다 사실 로스쿨은 많은 수의 변호사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p>	<p>고시는 “될 때 까지” 해야 하는 시험이다</p>	<p>사법시험의 평균 수험기간은 4-5년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C는 사법시험에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p>
<p>이것은 싸고 좋다</p> <p>도입 회의</p>	<p>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든 걱정치 않고 공부할 수 있다</p> <p>나는 1-2년 정도는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p> <p>나는 법역을 돈이 없다</p>	<p>비록 4년이 걸렸으나 이런 평균이다 나는 합격하였다</p> <p>나는 똑똑하니 2년 안에 붙으리라는 희망으로 도전하였으나 성공할지 잘 모르겠다</p> <p>나는 법역을 돈이 없다</p>
<p>그러나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모험을 강요받아서 안 된다. 이것이 사법 시험의 평등 아래 가려진 '불공평한 비용'이다.</p>	<p>여기 세 명의 사람이 있다. 이 중 사시에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p> <p>의대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학생이 의대 진학을 포기하고 다른 학과에 진학하지는 않는다.</p> <p>물론 국가고시 통과할 실력은 있습니다</p> <p>자신이 의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p>	<p>이것이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저렴한 이유이다</p> <p>물론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C가 노력하여 합격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p> <p>지력으로 학비를 내어 법조인이 되었다</p> <p>일부 장학금을 받았다</p> <p>특별전형으로 선발되어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p> <p>B나 C가 로스쿨 지원을 결심할 수 있는 이유는 로스쿨에 가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p>

## bkl 재단법인 동천

### 재단법인 동천 펠로우 변호사 채용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동천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력 5년차 미만 변호사 1명 (2016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포함,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동년도 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선발절차**
  - 서류접수 : 2015.12.7.(월) ~ 2016.1.18.(월) 24:00
  - 1차면접 : 2016.1.28.(목) 이후
  - 최종면접 :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2.17.(수) 개별연락
- **지원방법** 이메일 제출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www.bkl.or.kr)에서 입사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및 공익활동계획서, 성적증명서, 변호사자격증
- **문의사항**  
이메일(dcfbkl@gmail.com) 또는 전화(02-3404-7396 담당: 이희숙 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도 상반기 실무수습 추가모집

- **추가모집 기간** 2016.1.11(월) ~ 2016.1.15(금)
- **연수일자** 2016.2.15(월) ~ 2016.2.26(금) (10일, 80시간)
- **연수대상**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30명
- **연수장소** 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 강의실
- **연수내용**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ADR(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이해
- **선발기준**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ADR에 대한 관심(자기소개서) 60%  
경력 및 활동 사항 40%
- **지원방법** 지정된 실무수습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각 학교 행정실에 제출

##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6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모집

- **실무수습기간** 2016.2.15(월) ~ 2016.2.26(금) 매일 10:00 ~ 18:00
- **지원대상**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아닙니다.) / 공익 소송 및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 / 민사소송법 관련 과목 중 1과목 이상, 형사소송법 관련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모두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생
- **신청방법** 각 학교 홈페이지 참고 및 행정실 문의



#### 가로 열쇠

- ① 친권자와 자 사이에 친권자가 행사하는 행위의 성질상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 ② 미수범 중에서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한 경우이다. 형법상 미수범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장애미수(障碍未遂)와 다른 하나가 ○○○○이다.
- ③ 타인의 범죄를 방조(幫助)한 자를 말한다(형법 제32조) 즉 정범이 어떤 종류의 범죄행위를 행할 때에 이에 고의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가지고 원조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④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⑤ 증인이 법률상의 일정사유로 증언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⑥ 국제법상 조약당사국의 대표자가 조약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를 이룬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 ⑦ 노동조합 등의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장 또는 직업·산업에 있어서 파업 중에 있는 다른 근로자 단체를 지원해서 행하는 파업을 말한다.

#### 세로 열쇠

- ①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채무자지체'라고도 한다.
- ② 학문상으로는 널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위해 공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보통재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국유재산법상 사용되는 용어이다.
- ③ 예컨대 쌀 2가마니라든가 비누 1박스라는 것처럼, 종류와 분량만이 정하여져 있고 어디에 있는 쌀이라고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 ④ 어떤 국가에서 범죄를 행한 자가 타국에 도망하였을 때 그 타국으로부터 범죄행위지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 ⑤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으로 된 자를 말한다.
- ⑥ 노동쟁의에서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개입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조력하는 것을 말한다.
- ⑦ 소송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소송에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에 의하여도 법원이 존부 어느 쪽으로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이것을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가정을 할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받는 불이익을 ○○○○이라 한다.
- ⑧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현실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사업 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창**

## 가LAW 세LAW 낱말 퀴즈



문단류용⑩ 04년용④ 05년⑩ 05년용④⑤  
 05년용④⑤ 05년용④ 05년용④ 05년용④⑤ (05년)  
 05년용④ 05년⑩ 05년용④⑤  
 05년용④⑤ 05년⑩ 05년용④⑤ (05년)

	1				2				4
2			5					3	
								4	8
			5		7				
		6							
								7	





강원대학교



간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송남대학교



송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원광대학교